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第 4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11月 30日(木) 10時00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第4次 監査活動)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 가. 山林課 所管 _____ 2면
- 나. 建設課 所管 _____ 56면
- 다. 都市課 所管 _____ 81면

(10時00分 監査實施)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드리며 4일차 감사활동을 시

작하겠습니다.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の件(繼續)
(10時 01分)

○ 委員長 金鍾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禧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평창군 산림과장 이기춘

(산림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禧 : 산림과장 이기춘입니다.

평창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산림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까.

솔잎혹파리 피해목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 소생불가, 심,중,경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솔잎혹파리 피해 밀도에 따라서 심,중,경으로 되어 있는데, 소생불가는 완전히 구사 되었거나, 소생이 불가능 한것을 소생 불가능 지역으로 잡고, 심지역은 솔잎혹파리가 솔잎에가서 알을 낳고 있는 것이 50%, 그러니까, 솔잎 100개를 따서 50개 이상이 된 지역은 심지역이 되겠습니다. 50개 밑으로 있는 것은 중지역, 경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소생 불가에 대한 1,253ha의 조사는 언제 한것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올해 조사 한것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솔잎혹파리 피해목 사업량 1,660ha는 '95년도 사업량입니까? 과년도 분은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금년도 벌채 계획량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미벌채에 대한 향후 대책 '96년, '97년 벌채 숫자로만 자료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 이해가 힘들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미벌채에 대한 향후대책에 '95년도 벌채는 완전히 완료한 면적이죠?

○ 山林課長 李基椿 : 아직 완료가 안되고 벌채중에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금년도에 완료를 해야죠?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완료를 해야 합니다.

○ 金斗經 委員 : '96년벌채 2,150ha하고, '97년도 1,750ha는

○ 山林課長 李基椿 : 내년도와 내년후년에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 金斗經 委員 : 이것도 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조사를 한것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이면적 안에 소생불가 1,253ha가 포함된 면적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을 피해도별로 조사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러면 피해된 면적이 사실상 2년전에 소생불가능한 나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솔잎혹파리피해가 950ha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95ha 이상을 더 해 주었는데, 87ha 벌채를 하라고 했지만 벌채도 안하고, 신고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벌채를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산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도 벌채를 하라고 결정을 해주었지만 514ha가 지금까지 벌채를 안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어야 하는데 전부 예산보조금도 주고 했는데, 산주

들이 사실상 응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벌채를 기피하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제생각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허가가 제대로 빨리 안나와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그런데 피해가 많은것 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거든요, 피해가 적은것은 서로 할려고 하는데, 피해가 많은 것은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벌채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

○ 山林課長 李基椿 : 보조금은 ha당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지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년전에 죽은 소생불가능한 나무들이 솔직히 명년도 '96년도나, '97년도 계획에 들어가면 그나무를 벌채하여 생산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조를 해가면서 실시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것이 아닙니까? 생산가치가 있을때에 일괄하여 벌채하도록해서 산주의 소득도 얻고, 또, 예를

들어 목상한테 줄때에도 이득이 가도록 벌채를 해야지 벌건 산이 아직까지 방치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벌채계획량을 상급기관에 많이 요청하여 년도별로 전부 증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95ha를 했고, 금년도에 1,660ha 등 700ha가 더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2,150ha를 벌채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을 실지 보면 소나무 피해가 너무 심하다, 산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상급에도 요청을 하여 벌채 계획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우선적으로 소생불가한 나무가 2년전에 죽은 나무는 일괄하여 허가의 규제에 얹매이지 말고, 일괄하여 벌채할 계획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도에 요청을 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산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빨리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벌채에도 보조가 안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만 벌채가 가능하지 보조를 못하면 사실상 벌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벌채를 하기는 힘들고, 벌채한 다음에 조림이 뒷따라야 하는데, 한꺼번에 조림을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벌채계획량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중앙이나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수립하여 보고를 드려서 빠른시일내에 벌채를 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아울러 고속도로변, 관광지 주변, 국도변에만 사실상 방지를 했는데, 거기에만 살린다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솔잎혹파리 방제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관광지 주변 송이생산지역, 특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지 같은 곳 까지 방제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봉평면에도 6번 국도 변인데, 실지 한번도 수간주사를 방지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 보광휘닉스 파크 개발이 되고, 많은 관광객의 출입이 되는데, 경관 차원에서라도 그곳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 지면 살포인데 '95년 11월 20일부터 '95년 12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솔잎혹파리가 겨울이 되면 솔잎에서 땅으로 떨어져 땅속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 다음에 지면약제살포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전에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땅에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하기 때문에 11월 부터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다음은 하예작업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예작업을 산주가 직접 적영한 면적하고 산림조합이 위탁한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나와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자료에는 없잖아요.

○ 山林課長 李基椿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95 산림조합(임협)에서 위탁해서 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조합에서 698ha를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보조금은 22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22만 5,400원,

○ 山林課長 李基椿 : 자부담까지 포함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자부담 빼놓고,

○ 山林課長 李基椿 : 자부담 빼놓고는 12만9,072원이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지금 현재 보조금을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여 이 보조금으로 풀베기를 다 완료 할 수 있나요.

○ 山林課長 李基樞 : 보조금 가지고는 안되고, 자부담이 ha당 9만6,328원이 있는데, 보조가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산림조합에서 지금 위탁을 하여 산주의 하예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Sha에 대한 보조금 가지고만 했는데, 나머지 못한 ha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이 있습니까?

산주가 해야 되는지, 임협에서 해야 되는지?

○ 山林課長 李基樞 :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을 할때 산주부담금 40%가 있으니 산주 동의를 받던가, 인력으로 받아 100% 완료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산주가 부담한 지역도 있지만, 산주가 직접 부담을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산림조합에서 돈이 모자라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모자라서 하예작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보조금 가지고 하게 되면 60~70%밖에 못합니다.

30%에 대한 풀베기를 못한 면적은 산주도 안하고, 위탁한 조합에서도 안하고 그러면 하예작업은 하나 마나죠?

○ 山林課長 李基樞 :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아니,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것이나죠?

○ 山林課長 李基樞 : 100% 보조를 국가에서 해 주었으면 100%완료를 전부 할수 있는데, 40%가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부담을 안할때 100% 하예작업을 못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산주들이 이것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으면 정식으로 알려주고, 물론 공문이 등기가 아니니까 분실도 되고 해서 직접 못받아서 그런지 몰

가 산림조합에 계약할때에 ha당 얼마의 수수료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주가 직접 할때에는 산림조합에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다음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94년도 관리계획을 보면, 환원투자사업으로 사유림 10ha를 매입할 예정으로 답변했는데, 매입 하셨습니까?

자료에는 안나온 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인 환원투자사업으로 사유림 10ha를 '95년도 2월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매입을 하셨는지?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10ha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매입은 하긴 했습니다.

확실한 면적은 기억이 안납니다.

○ 李洙現 委員 : 6,000만원이라는 예산

을 가지고 10ha를 매입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국유림내에 사유림이 있는것을 매입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에 조림사업내용 중에 1,665,000본을 조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수종을 조림 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주로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세가지 수종이 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李基樁 :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 李洙現 委員 : 이 세가지 종류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李洙現 委員 :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

을 뽑아주세요?

그다음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임업후계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으로서 산림에 대한 의욕이 있고, 앞으로 이사람을 후계자로 지정을 했을때 모범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배울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나무를 많이 기르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임업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그외의 사람도 산림에 의욕이 강하고 또 이사람을 후계자로 지정을 해주면 그 산촌마을에서도 수범이 될 사항이 되겠다하며는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누가 지정을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군수가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용자도 해줄수있고 한때 이사람들이 아직까지 용자신청을 한것은 없고 저희가 산림사업에 많은 보조금 물량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주들, 임업 후계자는 그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고, 별도로 보조를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림목지가 1,112ha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무림목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나무가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30%이상 있을때 임목지로 보고, 30%미만일때는 무림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지역은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조림을 못할 지역도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집행한 사업비가 '94년도에 2억 8,0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5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두배정도 늘어나니, 위탁해서

집행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저희 사업량이 전부 늘어났기 때문에 산주가 실행을 못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위탁해서 지금 임협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산주들이 사실상 전부다 기피하는 사항이죠?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조금전 김두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업비로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도저히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산에 투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사업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임협에서 작업단이라고 하나요,

그사람들을 시켜서 거기에서 마진을 먹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 조금만 낭비 하는 결과만 상당수 초래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년도에 보니까 여러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부분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개발관련 용자금 지원단체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단기소득 임산물 표고생산에 용자인원 3명이 있는데, 1인당 2,000만원 나간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아니 3명에 2,000만원이 나간겁니다.

○ 李洙現 委員 : 3명에 2,000만원 , 그리고 단기소득임산물 야생화, 톱밥 , 표고생산은 어떤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겁니까?

어떻게 집행을 한 내용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야생화를 전부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요청하여, 심사를 한 것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산림 위원이 구성되어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용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산림 위원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어떤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독립가, 임업협동조합장, 그리고 산림사업에 유능한 사람을 위촉하여 그사람들이 심사하여 이 사람이 용자를 받아 꼭 필요한데 쓰겠다, 하여 심사를 거쳐서 용자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물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특혜의 의혹이 가장 많이 야기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림개발관련 용자금지원 단체 및 지원 현황인데요, 단기소득 임산물, 야생화, 표고, 임산물가공 이용시설물 톱밥공장에 대해서 대표자가 누구며, 지원하게된 원인, 심사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수간주사 사업과 방제지면약 제살포는 아직까지 시행 안했지만, 다른 것은 사업시행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사업시행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시행 시킬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禹康鎬 委員 :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 지면약제살포를 어디에 시행을 시킬거냐고요?

<p>○ 山林課長 李基椿 : 수간주사는 저희 관내에 솔잎혹파리가 주로 고속도로, 주요국도, 공원구역에 수간주사를 완료했습니다.</p> <p>지면약제살포는 220ha인데,</p> <p>○ 禹康鎬 委員 :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선임 할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p> <p>○ 山林課長 李基椿 : 수간주사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여 시행을 했습니다.</p> <p>지면약제살포는 저희가 직접 직영사업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지면약제살포를 하고 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수간주사를 임협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감독관청인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椿 : 예, 하고 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어느정도 시간을 내어 하고 있습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담당직원과, 계장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또 지도인부를 고용하여 그곳에 고정배치하여</p>	<p>지도를 금년도에는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수간주사 방제 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 다녀 봤는데, 군청에서 아무도 안나왔던데요?</p> <p>○ 山林課長 李基椿 : 군청에서 여러필지를 한꺼번에 다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곳에 지도 인부는 고정배치를 해서 매일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작업인부는 20명씩 다니는데, 아무도 안따라 다니던데요?</p> <p>○ 山林課長 李基椿 : 지도인부는 그안에 있습니다.</p> <p>지도인부가 별도로 있어서 그사람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고, 도면등을 보고 어디까지가 금년도 계획이고,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된다, 어느방법으로 해서 수간주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p> <p>솔잎혹파리 방제 표시판하고, 현수막 총수량 소요 예산을 자료 요구 했는데,</p>
--	---

임협에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委員 : 수의계약을 왜 임협에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임협에서 하니까, 거기에 간판도 같이 설치하라고 해서 시행을 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임협에 간판을 제작하는 공장을 갖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그러니까, 거기에 계약을 하면 그사람들이 공장에 간판설치계약을 하여.....

○ 禹康鎬 委員 : 이중 계약을 하도록 합니까?

돈이 448만원인데요, 산림과에서 직접할 수 없었습니까?

간판제작업소에다,

○ 山林課長 李基樁 : 거기는 수간주사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할때 설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계약할때 방제 표시판 같은 것은 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사실상 솔잎혹파리가 저희 관내에 많고,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 공원구역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많이 해서 사실상 고속도로변 같은 곳은 다른 사람이 볼때도 왜 여기는 소나무가 살고, 저기는 죽었느냐, 그래서 우선 알리기 위해서 방제를 하면 이렇게 나무가 산다, 그래서 위상도 많이 출연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500만원 까지 들여서 그것을 할거면 다른곳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지, 쓸데 없이 표지판을 만들어 그곳에 붙여 놓습니까?

그것도 잘보이는 곳만 골라서, 크게,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의 정리적 가치로 , 공익적 가치가 36배나 더 많다고 통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보조도 해줍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많은 예산을 더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안만들고 더 많은 지역을 방제하면 더 좋을거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 禹康鎬 委員 :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상부에서 지침이 간판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솔잎혹파리 방제지역에 입간판 설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세금내는걸로 이런것을 방제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山林課長 李基椿 : 저는 그것을 소모적인 전시행정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홍보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산림투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 집행금액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알릴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 집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필요한 숫자만 하지 너무 많이 해도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실지 불필요한 숫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가장 잘보이는 곳에 얼마정도의 거리를 두고 한나라는 기준도 없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였는데, 그것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홍보물 이니까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공작물이니까 잘보이는 장소에 해야지 홍보가 되지, 잘 안보이는 곳에 해봐야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6년도에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금년도에 했으니까, 고속도로변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야 하고, 필요치 않으면 사실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 계약에 들어 있다면서요?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우리가 판단했을때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계약서에 넣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안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참고를 해서 시행할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한다면 간판 직영사업장들하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협에 주어서 임협에서 다시 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위원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11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 01分 監査中止)

(11時 21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산림감시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 요원은 방위근무하는 요원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지, 또 보수규정은 군인 계급별로 책정되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 자료를 보면 급여내역에 보수와 보상금이 차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김두경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방제 문제에 대해서 촉구하는 뜻으로 다시한번 질의 드립니다.

평창군과 정선군이 비행기재 터널을 빠져나오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또는 방제를 해서 비행기재 터널을 빠져 나가 정선쪽으로 가면 소나무 소생이 되고, 평창쪽으로 오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평창군의 산림과가 없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 많은 수치

거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그곳에도 방제를 하셔서, 고속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 과 군의 경계에서는 심각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우강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부 임도로 인한 수해 주민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수 산하에 환경과에서 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수박밭은 보상을 하고, 임도개설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한 집행부 책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군청을 상대로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수박밭 보상은 되고, 산림과에서 발주한 임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안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군에서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본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禧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는 위에서 지침으로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의사를 반영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군인이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저희가 감독하고, 인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는 미탄면 비행기재 터널 주위에 방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가 더 많으니까 그곳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피해보상 관계는 사실상 산림과장인 저로서는 가능하면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도록 마음도 쓰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상에 매한데가 있어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고,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보상을 왜 안해주겠습니까?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형편이지 저희가 안줄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이사람들을 도와 줄려고 노력도 많이하고, 거기 주민들한테 다만 뭐라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산림사업으로 도와 줄수 있는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지역에 야계사방울 8 km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야계사업을 2km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민을 도와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劉熾文 委員 : 한 집행부 산하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수해로 인하여 수박밭이 침수된것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법규로 봐서는 군 산림과에서 발주한 임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차로 수박밭 피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법테두리에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법규만 따져서 농작물피해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니, 법에서 판결된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시설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나, 산림과에서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는 똑같은 예인것 같은데, 군에서는 일단 수박밭 피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진부면 주민들한테도 보상을 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 군청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국가를 상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기 이전에 쉽게 진부 주민은 군청을 상대로 하면 승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것 보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과 타협차원에서 타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게 들어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 행정의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촉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군과 임업협동조합이 모든 사업을 계약할때 법적으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조합이 수익을 얼마까지 볼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계획하여 발주할때 계약내용에 관리비라든가 기타 잡비, 보험료를 전부 계산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 劉燉文 委員 : 설계는 산림과에서 설계에 들어 갔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법으로 수수료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몇%의 수수료를 수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때에도 관리비라든가 보험료, 기타 잡비를 설계할때.....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법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수수료를 주라는 법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시책에 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劉燉文 委員 :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임도문제는 유돈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다음시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

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내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허가내역과, 훼손내역을 건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리고 저희 위원들 후반기 현지확인시 간평에 있는 평창연립뒤 산림훼손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두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드려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하신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간평 2리 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곳은 현지확인을 도시과에 요청을 하여 측량을 하기 전에는 산림훼손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분간을 못하겠으니 측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가보니까 그곳은 도저히 산림훼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육안으로 볼수 없고, 측량을 꼭 해야 되겠다 하여 측량을 하도록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 관련 용자금 지원단체 및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전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조림재원별 수송별 총괄표는 들어 왔는데, 안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함께 챙겨 주십시오?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委員 : 산림과 '95년도 국비 보조금, '95년도 도비 보조금 미착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미착금액은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착금은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 국비보조금 미착금 금액이 3억2,033만6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미착금액이 3억5,568만3천원 6억7,600만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11월이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12월만 남았는데, 회계년도 마감전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서 충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알겠습니다.

촉구하여 기간이 넘기 전에 도착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장기수조림 1억500만원, 환경조림 1억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감액되지 않고, 국비만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군비 부담액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조림물량이 변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것이지, 군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한것은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도비는 감액이 안되고 국비만 감액이 됩니까?

물량이 줄었다면,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은 설계 단비가 다시 조정되어 내려와서 감액이 된것

이지, 물량을 군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설계 단비가 변해서 감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설계 단비가 줄으면 국비만 감액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국비만,

○ 禹康鎬 委員 : 도비는 감액이 안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금액이 무려 2억500만원인데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설계단비가 조정되어 국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단비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단비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확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창군 독립가 구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모범 독립가, 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 독립가, 군수가 인정하는 자영 독립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독립가, 평창군에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런 분들한테, 모범 독립가, 우수, 자영, 법인 독립가로 지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모범 독립가는 산림청장이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나 모범 독립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수 독립가는 도지사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내 는 강원도에서 우수 독립가로 지정이 되면 강원도내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자영 독립가는 군수가 인정을 해주는데 군내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법인 독립가는?

○ 山林課長 李基樁 : 법인은 그지역에

법인 설정한 지역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은 몇 분정도 됩니까?

모범, 우수, 자영 독립가?

○ 山林課長 李基樁 : 현황은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모범 독립가 1명, 우수 독립가 12명, 자영 독립가 6명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자영독립가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자영 독립가를 별도로 지원해 준것은 없습니다.

산림사업을 하면 혜택을 주는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수 독립가도 도에서 지원 받은것이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지원 받은 것도 없고 혜택받은 것도 없는데, 왜서 지정을 해 줍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이사람들이 산림

을 경영할때 이 독립가가 별채사업을 한다 할때에는 자기가 매목해서 사업신고를 하면 그것을 인정하여 사업을 하도록 우선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우선하여 그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특혜를 주기 위한 구분 지정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특혜보다도 이사람들은 독립가의 모범적으로 산림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인정하여 산림사업을 원할하게 ,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것도 지정할 때 임업후계자를 지정할때 처럼 어느 위원회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을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심사위원은 어떤분들로 구성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산림사업에 관심

이 많거나, 거기에 일을 많이 하는사람
임업협동조합장, 독립가,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한후에 지정
을 해줍니다.

○ 禹康鎬 委員 : 그사람이 다 그사람
아닙니까?

그사람들 끼리 모여서 그렇게 지정을 하
고 그래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별도로 크게 혜
택을 주지 않지만 이사람은 우리 지역에
서 사실상 다른 사람보다도 모범이 되게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
문에 심사하여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부여한다면 그 자체가 혜택이 아닙니까?

○ 李洙現 委員 : 독립가 문제는 말이죠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면적을 몇% 이상, 조림실적이 몇ha
이상, 자격이 구비 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과거에 독립가 선
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모범 독립가, 자영 독립가는 각각 소유
별 확보 면적 2ha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정해 준다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또 모범적으로 산림사업을 했을때에 그
사람들을 우수독립가, 모범독립가, 자영
독립가로 선정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
니다.

○ 禹康鎬 委員 : 모범 독립가들을 국가
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은 직접적으
로 모범독립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지
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 독립가가
사업하고자 하는것을 자비로 할 수 있도
록 권장해주고, 융자지원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그사람부터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산림사업은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
에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융
자를 받지 않고, 보조를 받아서 일반 산

주 하고 똑같이 보조를 받는 형편이고
그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하여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산림개발 용자
금 지원단체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5명
에 대해서, 이분들은 모범 독립가, 우
수 독립가, 자영독립가 등록이 되어 있
는 분들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어떤 분들을 말씀
하시는지, 임업후계자,

○ 禹康鎬 委員 : 임업후계자 말고,
제가 자료 요구 했던 다섯분에 대해서
임산물가공시설, 톱밥공장, 야생화 재배
표고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2,000만원,
5,000만원, 3억씩 지원했는데, 이 다섯
분들이 전부 평창군 독립가 현황속에 들
어 있는 사람이나고 질의 했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거기는 독립가가
아니고, 임업후계자, 한사람은 야생화
를 오래도록 재배를 하면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재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야생화를 장려하는 뜻에서 저희가 용자

지원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
면 질의도 짧게 하고, 좋으실텐데,
자료를 너무 부족하게 내셨기 때문에
많이 물어 볼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입구에 월정거리 부터 올
라가는데 전나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예

○ 禹康鎬 委員 : 을 봄인가요, 파서 읊
겨 심고하면서 정매까지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군수께서 월정사에 가서 사과까
지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
까?

○ 山林課長 李基樞 : 그것은 저희가
78년도에 잣나무 가로수를 식재한것입
니다.

그래서 식재할 당시에 8m 간격으로 식제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항의하고, 민원이 야기 되기도
하고, 나무가 너무 커서 길이 협소하게

느껴 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팔것이나, 아니면 이것을 우리관내에 이식을 할것이나, 그래서 이식 할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식 하는것 보다 매각하여 수입을 잡는것이 좋겠다, 수입을 잡아서 다른곳에 그보다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매각하는 방침이 서서 매각을 했는데,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공개 입찰을 하여 사실상 많은 돈을 받았는데, 계약한후에 계약자가 작업을 하다 보니 까, 월정사 들어가는 진입로 , 학교 위 쪽으로는 사실상 땅이 월정사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는 월정사가 심고, 제가 78년도에 근무 할때 제가 직접 심었는데,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심었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 소유이기 때문에 케지 못한다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땅도 월정사 땅이고, 자기네 소유 라고 해서 소유를 확실하게 판정을 받을려면 법정까지 가야 하니까, 우선 이것으로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우선 그사람들 의견을 수용해 주자 해서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처음에 사전 조치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도록 행정처릴 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한 웃음거리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사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때 가로수를 그냥 놔두면 농경지에 큰 피해도 있고, 또 도로가 협소하게 느껴져 교통의 장애도 오기 때문에 굴취를 안하면 몇년후에는 별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자기네들 소유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군에서 수입을 잡고, 또 그것은 가로수의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월정사 진입로에 저희가 심은것인데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경관조성을 잘하면 국립공원도 그렇고, 월정사측에서도 상당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소유가 자기들것이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p>○ 禹康鎬 委員 : 국립공원 지역 아닙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예, 국립공원 지역입니다.</p> <p>○ 禹康鎬 委員 : 국립공원 지역에 풀도 제대로 못뽑게 하는데, 나무 벨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사실상 그것은 몇년후가 되면 어차피 베지 않을것 같으면, 안될 겁니다.</p> <p>○ 禹康鎬 委員 : 지금 월정사 안에 있는 전나무들은 그보다 좁은 간격으로 식재되어서,</p> <p>○ 山林課長 李基樁 : 옆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고 항의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을수 있습니까.</p> <p>○ 禹康鎬 委員 : 그랬으면 아예 심을때 폭을 계산해서 넓게 심으면 그런 문제도 안생기고, 이런 시비 같은것이 생기지 않을것 아닙니까?</p> <p>사업 시행 하실때 그런일을 감안 안하셨습니다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저희가 올해도 임</p>	<p>목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잡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로수를 밀식 하고 키워서 세입을 잡으면 군수입도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뭐라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된것이지 간격을 넓혀서 앞으로 이익이 없이 하는 것 보다도 밀식해서 수입을 잡는것이 오히려 낫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그랬으면 끝까지 집행을 하셔서 군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포기 하여 군수가 사과까지 하고,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경매 받은것 다 돌려줄정도로 했습니까?</p> <p>그런 뚜렷한 주관이 계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군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셨어야지,</p> <p>○ 山林課長 李基樁 : 다시 월정사땅에 있는것은 굴취에 제외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굴취해서 매각하는 계획을 다시 해 봤는데, 진부 번영회 측에서 그것을 파서 팔지 말고, 기왕이면 관내에 이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p>
---	--

그래서 민선단체장이 취임한후 그런 사항을 면밀히 보고 드리고, 그렇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팔지 말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관내에 이식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매각을 안하는걸로 방침을 세운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추후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추후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면 굴취를 해서 관내 이식을 하는걸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로수를 좁게 심어서, 파서 군세수증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된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간격을 좁게 심어서 저희한테 손해 나는것 없고, 그것을 키워서 그만치 예산 세입이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일반 지역에도 가로수를 심는다면, 너무 멀리 심지 말고, 간격을 8m정도 심어서 그것이 크면 하나씩 빼서 팔면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도 그사항을 보고 하니까, 좋은 안이라고, 가로수를 심어서 매각하여 세입 조치를 하면 좋은 안인데, 그것을 앞으로 장려하는것이 좋겠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은 잘했다고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견으로 인하여 군비손실은 없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군비 손실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전혀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委員 :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위원 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1時 54分 監査中止)

(13時 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주요사업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과하고 직접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李相薰 委員 : '95년도 산림과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조합에서 직접 한 것은 솔잎혹파리 임내정리2,000ha

를 저희가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조림관계는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도를 해서 산주들이 대부분 심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감사자료를 보니까 솔잎혹파리방제 사업량이 8,320ha중에 항공엽면시비를 3,000ha를 했는데,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항공엽면시비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여 3,000ha를 2회 방제를 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항공엽면시비 비용이 7,363만4천원인데, 이 비용하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다시말해서 인부를 고용하여 방제사업을 한 것과 비교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이것은 항공엽면시비를 솔잎혹파리피해로 인하여 영양이 부족한 소나무에 비료를 주는 것인데, 비료를 준 나무와 주지 않은 나무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비료를 준 나무가 다릅니다.

○ 李相薰 委員 :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이 많은 사업중에서 솔잎

혹파리방제 사업에 대한 증빙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산림조합하고 계약한것은 경리계에 서류가 있습니다. 지출관계로 그곳에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럼 놔 두시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예를 들어 하도급을 주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주었을때, 하도급을 맡은 사람이 몇ha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작업하는 인부에 따라서 작업능률이 달라 지는데, 작업조 별로 인원을 보면, 어떤 사람은 50명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80명으로 작업을 합니다.

○ 李相薰 委員 : 매년 보면 한사람이 1,000ha씩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도급을 맡아 사업을 시행하는 서류를 봤는데,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요구했던 산림개발관련

용자금지원단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3쪽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중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 다섯명 선정하는 심사조서를 붙여 달라고 했는데, 심사조서 내용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나중에 제출할 것을 처음에 제출 요구했을때 안했습니까?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덩굴제거사업, 풀베기 사업은 임협하고 전부 수의계약한 내용이죠?

○ 山林課長 李基樁 : '94 '95년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집행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제가 솔잎혹파리 방제, 덩굴제거, 풀베기 사업은 임협하고 수의계약한 사업이죠?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委員 :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장기수 조림사업, 환경조림수 역시

임협하고 수의계약내용 아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산주가 직접 하는것은 산주가 직접하고, 산주가 안하는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여 하도록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풀베기 사업, 덩쿨 제거사업은 산주가 직접 한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산주가 직접 한것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대행한것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산주가 직접 사업시행을 했을때 확인은 몇번정도 나갑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회수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지도 인부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협이 하는 사업은?

○ 山林課長 李基椿 : 임협이 하는것도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몇번 정도 나갑니까? 많이 나갑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많이 나갑니다.

○ 禹康鎬 委員 : 한달 기준으로 몇번

나갑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달수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사업량에 비해서 한장소에 한두번 정도는 출장을 나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 요지는 이사업들이 대부분 수의계약 사업인데, 산림과의 각종 사업의 부대비 집행 내역을 보면 무려 예산액이 4,000만원에 가까운 3,989만2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대비가 필요합니까?

대부분 수의계약 사업인데,

○ 山林課長 李基椿 : 수의계약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부대비는 사업비에 5%이내의 부대비를 세운것입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많은 돈이 아닌데, 적은 부대비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셨으면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금년도 사업은 저

회가 지도 인부도 많이 고용했고, 임업 직원이 출장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 禹康鎬 委員 : 올해는 잘했는데, 전에는 잘 못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제가 오기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는 몰라도 제가 오고 부터는 감독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답변자료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공사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공무원은 현장지도감독에 임하여야 하나 기동력 및 인력 부족으로서 적기 현지 지도 감독이 지난 하다라고 현지확인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부대비가 필요 합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해서 부실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 山林課長 李基椿 : (녹음청취 불능)

○ 禹康鎬 委員 : 사업비 책정이 물론

연장 km보다 적으니까, 설계 시공에 이상이 있을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대비를 집행하면서 현장 감독을 철저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는 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임도개설할때 임협에 수의계약을 하면 임협은 보통 8km를 한다고 하면 하청업자를 몇명정도 두고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임도는 제가 볼때에는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자가 석공할때 필요하고, 포장할때는 포장공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공작물을 설치할때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용하지만, 하청은 아니고, 임협이 직접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직접 나가 봤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도는 특수계약조건

<p>에 의해서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직접 하고 있습니다.</p> <p>그곳의 장비는 임대 내어서 장비를 쓰고 있고, 특별한 기술인은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임협에서 다른 업자한테 안주었다고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할 수 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만약에 다른 업자가 나오면 과장님 책임 지실수 있습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석공이라든가, 특별한 기술 인력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하청을 줄수 없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줄수가 없는데, 만약에 주었다면?</p> <p>다른사람이 사업시행을 했다면 감독소홀로 과장님 책임 지실겁니까?</p> <p>○ 山林課長 李基樁 : 직접 실행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93년도에 강원도지사가 우리 평창군에 래군했을때, 당면사항으로 임도시설 단가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 건의를 했을때, 도지사께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자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p> <p>재해보상 차원을 떠나서 하자보상 차원에서 보상 조치를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p> <p>'93년 8월 13일자 입니다.</p> <p>○ 山林課長 李基樁 : '93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p> <p>○ 禹康鎬 委員 : 아까 유돈문 위원께서 변호사한테 문의한 사항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p> <p>산림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간동안 군정질문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때 까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추진해 온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p> <p>○ 山林課長 李基樁 : 임도에 의한 보상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도 그 규정</p>
--	---

이 없으면 예산을 계상하지 못합니다.

산림과장인 저로서도 임도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거기에 따른 각종 보상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주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상을 해줄수 있으면 꼭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가능하면 민사재판을 하여 보상을 해주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보상을 해줄수 있겠다는 것을 주민들 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는 것이지, 해줄수 있는건데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

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유돈문 위원께서 질의 하실때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산업과 역시 대과대 지원으로 해 주었습니다.

유독 산림과만 못해주고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농민한테 돌아가는.....,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과에서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군정질문 끝나고 보상 협의를 해 줄수 있는 과에 한번 협조를 구한적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협의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협의사항이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기획실장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협의를 해 봤지만 사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산림과에서 보상을 안해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도 뚜렷한 규정이 있어야 해주지, 어떻게 해 주느냐, 그래서 못해 주었는데,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지만, 꼭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실 자료를 안만들어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서로 협의 한것이지,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청내에서 서로 협의 한것이지 문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청내에 있는 실과와 협조를 했으면, 다른과는 보상이 되었는데, 산림과만 유독 보상이 안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그문제는 저한테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왜 이것은 산림과에 안해 주고, 다른 부서에 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해줄려고 해보니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안해주기 위해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얘기가 안되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산업과와 환경보호과는 기획실에서 알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지출해 준겁니까? 예비비에서?

○ 山林課長 李基樞 :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 禹康鎬 委員 : 그럼 제가 기획실장한테 산림과에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행정감사때 예산계에 말씀을 하시던가,

○ 禹康鎬 委員 : 업무자체가 산림과 소관 이잖아요.

○ 山林課長 李基樞 :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만 하는것이 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세워 주는 것은 보상을 못해 주는거 아닙니까?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예산을 세워 달라고 몇차례나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수시로 했습니다. 특히 상월오개리 주민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보상을 꼭 해주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몇번 협의를 해 봤지만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만 보상이 되는 것이지, 예산 없이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 劉燉文 委員 : 과장님 수박밭은 예비비에서 나갔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나간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산림과에서 닦는 임도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야만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나가잖아요?

예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집행 책임자는 한 군수 산하 아닙니까?

과장님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기 이전에 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군에서 꼼짝 없이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작물 피해액이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는 농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1,000만원을 다 주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나가셔서 농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군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 군에서 저가지고 물어주면 행정소송 진정에 대해서 군에서는 얼마만큼 누를 끼칩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자꾸만 규약이 무슨 규약입니까?

법으로 가지고 하는데 규약이 무슨 규약입니까? 군에서의 규약입니까?

법으로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규약만 따지면 군에서 만든 규약밖에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규약을 가지고 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살고 있는데 자꾸만 규약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하면 진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 변호사한테 분명히 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자꾸만 규약만 따지면 뭐합니까?

○ 禹康鎬 委員 : 기획실장님 하고 상의를 하셨는데, 전혀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기획실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월오개리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나가서 먼저 만나봤고, 여기에 와서도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여러가지 해 봤는데,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딱 한것은 아는데 규정이 없어서 못해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장이 얘기 할때에 사실 어려운줄은 알지만 그것은 우리가 꼭 보상을 앞으로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마을길 포장

을 해주고, 산림과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것 같으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실에서도 협의를 하여 마을길 포장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저희도 산림 사업을 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여,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나, 해서 야계사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약 8km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2km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이 km당 국도비 합쳐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2km를 할려면 1억6,000만원정도를 마을에 사업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부락에 수해 피해라서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무엇이든지 지원을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 상월오개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네 가봤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피해가 많아서 참혹한 지정입니다.

저도 느꼈고, 그사람들에게 동정이 많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거기에 주민들이 정부나 집행기관을 믿고 마음 편히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해주겠다라는 노력이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 요구를 했을 뿐이지, 도에서 됐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 山林課長 李基椿 : 할 계획이지, 어디 까지.....,

○ 禹康鎬 委員 : 계획을 주민한테 믿으라고 그러니까?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것이 집행부인데, 계획을 믿으라고 그래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자꾸 저를 책망하고 있으면 저는 할 얘기가 없죠, 그렇게 얘기 하면,

○ 禹康鎬 委員 :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저는 제대로의 산림과장 위치에서 그래도 뭔가 부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노력해서 나온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야계사방에 2km 정도를 내년도에 이부락에 혜택이 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보상 관계는 사실 예산 관계라서 예비비에서 주던가, 예산을 계상해서 주던가,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 를 하여 줄수 있으면 주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군정질문 끝난지 무려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동안 그 정도 답변 하나 못구했다면 과장님이 얼만큼 산림과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다가 계속 화살 돌리지 말고 과장님이 얼만큼 그 직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말 믿고 주민들이 살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하여 꼭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禹康鎬 委員 :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질문때도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만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산림과장 위치에서 꼭 해주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수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 해 주셔야지, 산림과장인 제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 禹康鎬 委員 :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 山林課長 李基樞 : 이것은 현재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가.....,

○ 禹康鎬 委員 : 보상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보상규정이 왜 없습니까?

정말 보상 규정이 없어요?

과장님 얼마든지 비켜 나갈수 있는 보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 山林課長 李基樞 : 여기에 보면 사실상 피해액이 2억이 넘기 때문에 적은 액수 1~200만원 정도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지만 2억이 넘기 때문에 2억에 대한 것을 산림과장인 제가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드릴수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산업과에서 대과대 지 원을 얼마 했는데요?

○ 委員長 金鍾永 :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지금 정기감사에 출석되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치 충실하고 명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후 14시 1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 00 分 監査中止)

(14時 24 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수의계약한 임협과 임도문제를 상의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禹康鎬 委員 : 제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까?

임업협동조합과 임도복구문제를 협의해 보신적이 있느냐고 질의 했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복구문제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 문제로 협의 한것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계약이 안되었다고요? 무슨 계약이 안되었다는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복구설계에 의한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저번 균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검사원 한장만 해도 임협에다가 원천적으로 공사를 새로 시행 시킬 수 있습니다.

천재로도 안되고, 인재로도 안되고, 풍수해 대책법에도 안되면, 임협에 보상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상의를 안해 보셨어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먼저 협의보다도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얘기가 나왔는데, 임협에서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왔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쪽에서는 빈약한 임협인데 천재지변에 의하여 난 것인데, 임협에서 다시 복구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사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협이 빈약합니까? 신용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임협 재정이 좋습니다.

모든 사업을 대부분 임협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이익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액이 생기고, 신용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임협의 재정 구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임협이 빈약합니까?

준공검사원에 뭐라고 썼어요.

제가 다시 읽어 드려요.

만약 공사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

자가 발견 될 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한다고 직인을 찍어 제출 했어요.

그런데 왜 못받아 냅니까?

서면으로 한번 보상 하라고 해 본적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서면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왜 안하셨어요? 시행청이 평창군 이에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시공을 잘못 한것 보다도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났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정하여 재시공 요청을 안 한겁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또 나머지 읽어 드릴까요?

임도시설공사에 따른 현장 지도 감독 공무원은 상기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여야 하나, 기동력 및 인력 부족으로서 적기 현지 지도 감독이 지난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집행부의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공동 책임 질 겁니까?

집행부와 임협이 주민들한테요?

임협에서 안몰려면 집행부에서 몰어야 합니다.

인재로도 보상이 안되고, 천재로 안되고 풍수재해도 안되고, 뭘로 보상해 줄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뚜렷한 풍수해 대책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에도 농작물 피해 보상을 사실상 못해주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의회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의, 영월군의회의 의원 아니에요. 평창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같은 시행청 안에서 같은 집행기관 밑에서 보상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임도시설은 당초에 80%는 국·도비, 지방비 보조로 시공을 했고, 산주가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산주부담 규정이 있지만 산

주 부담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와 시·군비 10%로 부담 하여 100% 사업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도는 산주 부담이 있던것을 산주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임도시설을 다하면 산림 소유자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산주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도시설을 원하는 산주가 산주중에 몇%나 되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임도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 하지만, 산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우리가 직접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동의를 받으러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동의를 잘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몇번씩 출장을 가서 동의를 받는 형편에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도가 막상 산주한테 혜택이 돌아 간다면, 쫓아와서 해달라고

그렇것 아닙니까?

동의를 몇번씩 찾아가서 받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해 안해준다면, 원하지 않는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제 시행을 해서 그만큼 주민한테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선서하시고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임도가 공공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지방도와 같은 도로가 아니고, 산림내에 산림사업을 위한 도로로 국·도비 보조와 지방비 보조로 시설을 하고 있고, 작년 이전에는 산주 부담이 20% 되었는데,

○ 禹康鎬 委員 : 임도가 공공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 했어요?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익시설은 될 수 있어도, 공공시설로 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공익시설과 공공시설

의 차이가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공익시설은 여러 사람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공익시설이고, 공공시설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나,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나, 글씨 딱 한자 차이예요? 다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사실상 이것은 산주가 닦아야 하는데, 산주의 재력도 부족하고, 산림에 대한 것은 개념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보다는도 공익기능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임도시설로.....,

○ 禹康鎬 委員 : 국가에서 사업 시행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왜, 힘없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 가면서 공익시행을 하냐 말이에요?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사업시행을 해놓고, 주민한테 피

해를 주어 가면서 공익시설을 해요,
원하지도 않는 것을 ,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익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월오개2리 임도피해 같은 경우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집중 폭우
가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
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을 km당 단비가 적은 예산으
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임도시설
이 안되어 호우에.....,

○ 禹康鎬 委員 : 본의원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 山林課長 李基椿 : 저희는 천재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천재로 확실히 판단이
됩니까?

○ 禹康鎬 委員 : 공익시설이라고 그랬
습니다.

그러면 공익시설에 관한 피해보상 규정
은 뭐가 있습니까?

공익시설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

다면, 피해보상 규정으로는 뭐가 있습니
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피해보상 규정은
잘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거기에 관한
피해보상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수해피해가 났기
때문에 풍수해 대책법에 적용하여 산림
복구라든가, 임도복구의 예산은 전부 계
상이 되었지만 농작물 피해에 관한 규정
이 없어서 사실 보상을 못해 주는 형편
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시 원론적인 얘기입
니다.

평창읍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210만5천원을 환경
보호과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농작물피해 보상규정에, 이상하지 않습
니까?

수박밭은 피해보상이 되는데, 옥수수밭
감자밭, 당귀밭은 보상이 안되요.

왜 그렇습니까?

상월오개리도 그곳에 수박을 심으면 보상해 줍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수박밭은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해서 그곳에 오수가 들어가 피해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뭐를 설치 안해서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침출수 방지시설,

○ 禹康鎬 委員 :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해서 방류되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었다는 얘기죠?

○ 山林課長 李基樁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준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출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임도는 그밑에 농작물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왜 못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릴겁니다마는 km당 단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했다고.....,

○ 禹康鎬 委員 : 하나도 하지 않아서 보상해 준 경우도 있는데, 하다가 말았는데도 왜 보상을 못해 줍니까?

침출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박밭이 망가졌다고 210만5천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하다가 말았는데 왜 보상을 못합니까?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가진것인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여기 피해보상관계는 별도로 연구검토하여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얼마를 더 연구검토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상부기관에 자문을 구해 봤지만 수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보상한 예도 없었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정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 할려고 해도 규정이 없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기다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것을 위원님이 고려를 해주셔야지, 이거 왜 안해주냐고 말씀 하시면,

○ 禹康鎬 委員 : 아니, 예산규정이 왜 없습니까?

지금 해 줄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공익시설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으로도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글썄 그것은 지금 현재 까지.....,

○ 禹康鎬 委員 : 아니면 관리 감독을 잘못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줄려고 애를 써 봤지만, 보상 해준 예가 없

기 때문에 사실상 해 줄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른 군에서 안해 주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해 줄려고 애를 써봐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었고 다른 군이나, 도, 중앙에도 알아 봤지만 도저히 보상 규정이 없어서 피해보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환경보호과, 산업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주었는지?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도 물어 봤는데, 자기네들이 공공시설물로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액도 200만원정도 되어서 보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200만원은 적어서 해 주고, 2억 가까이 되는것은 많아서 못해 준다는 거죠?

당위성이 있습니까?

적은 것은 해주고, 많은 것은 못해 주는

것을 누가 이해 합니까?

그런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 줄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 다시피 공공시설물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210만5천원을 지급해 주었으면, 과장님도 그 법을 적용하여 지급 해 줄 수 있잖아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임도는 산지 시설이라서 공공시설물인것 보다도 개인이 임도 시설을 해야 하는데, 산주가.....,

○ 禹康鎬 委員 : 10~ 20%부담을 산주가 안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부담을 하지.....,

○ 禹康鎬 委員 : 산주가 부담 안하기로 하고 받은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시행청과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죠?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을 산림과장한테 해주기를 말씀 하시는데, 저로서는 해 줄려고 노력을 해도 확실한.....,

○ 禹康鎬 委員 : 산림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누가 답변 해요?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십니까?

그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에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시다마는 산림과장인 저로서는 꼭 해주어야 한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그동안 상의를 한번도 못해서 답변을 못가지고 나오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상의를 했어도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획실장님하고 말씀 하실때 내용이 정확하게 상의 하신 내용이에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피해인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 보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보상청구위원회에 심사요구 청구는 피해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禹康鎬 委員 : 원인 제공자가 해주어야죠?

○ 山林課長 李基樁 : 제가 도와 줄수 있는 것은 이사람들이.....,

○ 李洙現 委員 : 다시 말해서 과장님 명의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상 농민들이 여기에 행정적인 문제를 과장님만큼 알지 못하니까 과장님이 대행 하셔서 이러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해서 하실수 있는지 그 용의를 여쭙어 본 겁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자료 제공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앞장서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 사람들이 보상 청구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판결에 관계 없이, 어떻게 되었던, 간접적인 보상을 통해서라도 임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간접적으로 저희가 도울수 있는 것은 부락주민들과 부락대표인 이장을 몇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로 포장을.....,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내용은 좋습니다. 말씀 안해 주셔도 좋은데, 이피해에 상응하는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계시냐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간접적인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사업을 해야지만 민간인에 대한 자선적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업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산림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있으면, 그사업을 제시해 주면 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줄수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고 물어 보니까, 사실 마땅한 사업이 없다고 하여 막연한 심정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심사청구를 해서 만약에 인재로 판단이 나서 결과가 내려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그 심사에 따라야 되겠죠.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천재라고 판단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상을 못해 줄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접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일단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협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임협에 복구 하라고 지시하기가 어

렵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임협이 무슨 특혜단체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특혜단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육성단체가 아니라, 육성단체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잘못 시공했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재시공을 하던가,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시공이 사실상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을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 禹康鎬 委員 :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委員 : 지적사항 보여 드릴까요?

계대로 시공 안했잖아요. 준공검사 내줄때도,

○ 山林課長 李基樁 : 설계대로 시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대로 안되어 있으면 준공
검사가 되겠습니까?

○ 禹康鎬 委員 : 들어가는 입구만 보기
좋게 자작나무 같은 것으로 식재해 놓았
어요.

뭐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임협하고 협
약한 것이 있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그냥 눈감고 해준 거예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공사감독 공무원
은 설계에 의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
어서 설계에 의한 시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었지....

○ 禹康鎬 委員 :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시행한 임협에
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반
드시 확답을 받아 내세요?

평창군에서 책임 지기 싫으면, 시행청에
서이나, 시행자에게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곳 중에 한곳은 책임을 져야죠?

둘다 책임을 회피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은 위원님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km 당 단비가,

○ 禹康鎬 委員 : 그 얘기는 아까 들었
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제말은 단비가 적
은것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완벽한 설계가 못되어 있고, 그 설계대
로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임도가 못되었다
는 것은 우리가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포크레인으로 8부 9부
능선에 길 낸것 밖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임도 입니까?

잔디로 사면처리를 했어요? 풀씨를 뿌렸
어요?

포크레인으로 8부 9부능선에있는 산길을
바가지로 퍼 놓은것이 무슨 임도예요.

그것이 주민한테 왜 필요 합니까?

그것이 무슨 공익 시설입니까?

주민 잡는 공익 시설이에요.

그런 사업을 왜 집행 합니까?

주민한테 피해 입히면서,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우리지역은 마사
토라서 수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도시설을 하지 않을
려고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마사토가 많아서 붕괴
우려가 있으면 시행하지 말았어야죠?

○ 山林課長 李基樁 :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안합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우강호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저 한가지만 하겠습니
다.

시행청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시행자 한테 책임을 지을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책임은 천재지변
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서 복구비라든
가 임도복구비 예산은 전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복구를 하도록 조치가 되
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임협과 평창군수
도 같이 행정소송 들어가요

감독공무원 관리 감독 잘못된것 다 해가
지고요.

자료가 왜 필요 한겁니까?

자료가 왜 필요해요.

준공검사원 왜 받았어요. 이거 있으면
임협에 몰릴수 있는데, 왜 못몰려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
어난 것인데, 임협에 어떻게 몰립니까?
산림과장 한테 자꾸 추궁을 하면 뭐라고
애기를 합니까?

○ 禹康鎬 委員 : 대통령도 잘못 하면
유치장 갑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저한테 자꾸 추궁
하면 저는 뭐라고 애기 해야 됩니까?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 왜 답변할 여
지가 없어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천재지변에 의해
서 손해가 나서 못해주고 있는데, 어떻
게 책임을 집니까?

○ 禹康鎬 委員 : 과장님 그것은 책임
회피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분명히 보상해 주었어요.
산업과 분명히 보상해 주었어요.

한 시행청 안에서 한 군수 밑에 있는데 왜 못해 줘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수박밭 보상은 침출수 방지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잘못했다 하여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임도시설은 행정부에서 잘못 한것이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임도시설은 풍수해 대책법을 적용하여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복구비 보조, 산사태 보조, 임도시설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 그랬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급 한 210만5천원도 절대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산업과에서 지급한 대과대 지원도 절대 안됩니다.

전부다 자금 회수 하실 수 있어요. 그과에 촉구를 하여.....,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 禹康鎬 委員 : 그것다 천재잖아요. 누가 냉해 입으라고 그랬어요. 농민이 냉해 입자고 그랬습니까?

냉해 입은거 아니에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보상규정이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줄수 있고, 보상 규정이 없을때.....,

○ 禹康鎬 委員 : 아니죠,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보상 규정이 있고, 산업과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보상규정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해당 규정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산업과에는 종자라든가 농약은 보조를 해주도록 규정이 있어서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군에서 직접 공공시설로 했는데, 침출수 방지 시설을 안해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에 군수가 30명 됩니까?

실과소 마다 군수가 따로 있고, 읍면마다 군수가 결재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한 군수님 밑에서 결재를 받는데, 무슨 피해 보상규정이 틀립니까?

왜 틀려요?

○ 山林課長 李基樁 : 과마다, 임도, 쓰레기장, 농작물 각각 다르고, 논 밭에 냉해 관계라든가 종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있어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침출수로 보상받은 사람은 수박밭 농사 짓는 농민이죠?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맞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대파대 지원 받은 농민들은 농민 아니에요? 농민 이죠?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농민 아니에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산업과에서 보상 해준 것은 풍수해 대책법상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한것은?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공공시설물 관리 규정을 적용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과장님은 공익시설물 피해보상 규정을 적용 안하세요.

○ 山林課長 李基樁 : 공익시설은 있지만 공공시설은 안되고, 이것은 개인이 시설 할 것을 국가에서 보조한 임도지, 국가에서 꼭 공공시설로 필요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국가에서 필요로 주민한테 협조를 얻어서 한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산림 시책상, 경영상,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몇km씩 임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산림관계에 대한 공익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임도를 시설해 주고, 조림지에도 보조해 주고, 각종 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공익적 가치를 앞세워

주민을 죽일 일이 생긴다면 공익적 가치는 없어야 되요.

○ 山林課長 李基椿 : 완벽한 임도시설이 안되어 수해로 피해가 많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천재지변에 의한 풍수해 대책법을 보면 보상 규정이 사실상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지, 제가 보상을 해주지 않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도 여러번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규정을 적용하던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댕아 달라고 해서 댕는 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균정질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분 좋아서 던진 들맹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전시 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8부 9부능선에다가 임도를 댕었다면, 원하지 않은 임도를 댕아 그 밑에서 당하는 주민들 피해를 국가에서 왜 보상을 안해요.

당연히 해야죠?

시행청에서 하던가, 시행자가 하던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확실하 하세요?

충분한 기간동안 자료를 미리 내 드렸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자료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립니다.

○ 禹康鎬 委員 : 규정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 주었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우강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중지 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3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 00分 監査中止)

(15時 37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만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전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중진부면 상월오개리 임도시설로 인한 호우피해 농가 보상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副郡守 朴商滿 : 부군수 박상만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임도사업을 한거에 대한 피해 사항을 전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상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법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 즉 말하자면 개별적인 보상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부락에 해당되는, 그 부락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위원님과 그부락의 대표자와 사업을 선정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산림과장님하고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답변 하시도록 되었는데,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두번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현재 망가져 있는 총 피해에 대한 농작물을 전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던 부분도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느정도의 보상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결여 되었기 때문에 이시간 까지 이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한 집행부 안에서 보상이 되는 과가 있고, 보상이 되지 않은 과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서는 이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도 가능하면 좋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주민들한테 반드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朴商滿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군수님,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평창군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이영범 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인사)

방재계장 장근용 입니다.

(방재계장 인사)

기반조성계장 이운배 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인사)

토목계장 석명준 입니다.

(토목계장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국비와 도비의 미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 국비 도비가 미착금 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환경지정리 사업과 농경지정리 사업비 일부분에 대해서 '95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이나 환경지정리사업은 착금이 다 되었고, '95년도 가을 착수분에 대해서만 착금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95년도 가을착수를 지금 했기 때문에 년도말까지는 40%에 대하여 착금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정주권사업에 9억1,800만원이 도비로 미착금이 되었는데,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 한테는 도에서도 그리고 우리과에서도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삭감이 다 된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돈이 착금이 안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착금시켜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국비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가 2억 3,500만원이 착금이 안되었는데 이정도면 농업용수 관정을 5개 정도 팔수있을 정도의 분량이 될텐데

○ 建設課長 洪基杓 : 2억 3,500만원 착금이 안된게 아니고 그것은 감되었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질문사항에서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남쪽에 한해

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되고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자료에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 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골재채취 현황 인데요 개괄적으로 7,300만원정도가 군 수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총7개업체, 하천골재, 육상골재 합쳐서 7개 업체가 허가 업체입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업체별로 주민세에 미치는 영향, 군수입, 사용료를 별도로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대화정주권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지구로의 변경을 선행한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도시계획편입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먼저 법을 여기면서 선공사를 시행한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강원도의 기반조성과에서는 사업집행 승인이 떨어졌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대로 도시계획을 편입 시킨 다음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에는 법을 어겼지만 기반조성과로 봤을 때에는 사업집행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시행했습니다.

도시계획과로 볼 때에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집행기관 대 집행기관이고, 과 대 과 문제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주민과 집행기관의 문제라면 문제가 제기 안되겠습니까?

주민하고의 관계가 없는 것이 도시계획

부서와 우리 사업계획도면하고는 이미 맞게한 상태입니다.

그상태에서 고시만 안난 상태이지,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기관이 집행하는 행사는 이런 법을 여기면서 시행해도 괜찮은데, 주민이 작은 것을 여기면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 반드시 뒷따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완벽하게 해 주실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가을착수계획 중에서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오개, 대화, 상월오개리 인데, 이것은 전부 아닙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전부입니다.

읍면부분에서 오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공사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장 감독을 건설과에서 대부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감독 하실때 사업장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먼지나 흙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아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등청을 할려고 하다가 위에 덮개를 덮지 않은 차량때문에 5분동안 실갱이를 한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난폭하게 달리면서 흙은 흙대로 떨구어서 차에 떨어진적이 있었는데, 이런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실태조사 내역에 보면 개축,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점검 결과 개축 19개소, 보수 10개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95년도 개보수 내역은 개축을 12개소, 보수 3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럼 나머지 개축 7개소, 보수 7개소는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연차적으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개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사업투자를 하는데, 교량관계가 1~2억이 아니라 최소한 2~3억 들어 가기 때문에 1년에 2개 3개이상 교량을 놓을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소씩 놓고, 그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그해 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에 들어가 있는 교량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양여금 사업에 보태어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축이나 보수되지 않은 부분은 위험부담이 적은 곳입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우선순위로 결정하기 때문에,

○ 禹康鎬 委員 : 여기에 사업비가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위험 교량 개·보수 내역을 개소수별로 사업집행한 내역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다음 '95년 농어촌도로 이월사업 내역
입니다.

후평 ~원당간 진도는 100% 다되었다고
했는데,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후평~ 원당간은
'94년도 사업에 '95년도로 이월된 사업
입니다.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노론~ 지동간은 준공
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월
16일 한것은 100% 준공, 11월 13일자는
100% 했는데 준공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
에 준공검사 처리가 안되었으면 안된 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볼려고,

○ 建設課長 洪基杓 : 자료를 제출한 다
음에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하천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조에 근무하셨고, '95년
도에는 2조에 근무 하셨는데, 이중육씨
가 여자입니까? 남자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남자 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이분은 실지 하천감시
원 청원경찰인데, 실질적인 근무를 사무
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럼 조편성에서 삭제
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하천감시원은 원
칙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시키면 안됩니
다.

그렇지만 저희들 건설과 실정으로 직원
손이 워낙 딸리므로 하천감시원을 보조
요원으로 사무실에 1명씩 근무토록 시
켰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도 조로 편성하여 배치
시키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건설과장님 재량하에
그렇게 하신거라는 말씀이죠?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 지급을 보면 '94년도, '95년도 지
출 과목을 보면 급식비라든가 가게보조
비, 시간외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

비가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 建設課長 洪基杓 : 예산에 다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4년도, '95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 建設課長 洪基杓 :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 가지고 하는데, 근무수당이나 체력 단련비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 상여금, 월액여비는 건설과 예산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수당예산액은 엄청난 양입니다.

평창군청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안 서있는 예산은 안 넣은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예산에는 안 넣었는데, 집행액에는 왜 넣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집행은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 하죠.

○ 禹康鎬 委員 : 저 같은 사람은 혼동

이 많이 오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얼마 있었다고 삼입을 시켜서 집행액을 넣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예산액에는 없는데 집행액이 있으니 까 당초예산에 산정하여 집행을 해도 될 것을 당초예산에 안넣고 나중에 반영했냐고 제가 질의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보면 수해피해지구및 복구계획에도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의 세분된 구분대로 수리시설, 하천 제방, 도로, 교량쪽으로 구분을 하여 오대천 수해복구 하면 오대천 수해복구가 어딘지 금방 알수 있도록 자연부락명을 표기 한다던가 주소를 상세히 표기 해서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지 주민들이 물었을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비가 배정되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로는 미흡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자연 부락명까지 표기를 하여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建設課長 洪基杓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각종 부대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대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가설등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 같은 경우도 몇개소에 얼마, 몇개소면 어디 현장에서 얼마라는 내용은 없고, 계, 여비, 기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서식 인쇄를 1,000만원 가까이 인쇄할 일은 없을텐데요.

부대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괄적인 범위보다는 사업장별로 상세하게 부대비 집행 내역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재산의 표시도 다 되어 있고, 계약년월일, 매도금액까지 되어 있는데 매수자가 누군지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매수자 표기를 하여 다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12명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지금 사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하천관리를 하자면 하천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만, 제일 취약되는 업무자체가 골재반출입니다.

민수용 골재장에서는 2명씩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하천감시원들이 7시 ~ 8시에 나갔다가 일몰시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가 나오면서 문을 채워 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민수용 골재장이 산재해 있을때에는 인원이 사실 모자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사람들이 출퇴근을 안하죠? 본청으로,

○ 建設課長 洪基杓 : 본청에 들어 왔다

가 가깝게 있는 장소에 배치받은 하천감시원은 사무실에 들어 왔다 나가고, 진부나 도암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막바로 나갑니다.

○ 李洙現 委員 : 그것이 잘 지켜 집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그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일지를 저희가 직접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사람들의 근무상황 파악은 어떻게 하시나요?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이나 담당계장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사실상 하루 이를 빠지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민수용골재에 투입되는 인원만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수용 골재장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4명은 어디에서 일하

는 분들입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일용인부 4명은 저희들이 양수기 관리 요원이라든가, 폐천부지정리원,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용 인부, 그런 인부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주요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재해대책장비, 한해대책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주요 종합장비 유니목이라고 1대 있는 것은 독일제 벤스입니다.

그것은 군에 비치해 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유니목 소방차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평창읍에 1대, 도암면 1대를 분산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로우더 1대 또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한해대책장비는?

○ 建設課長 洪基杓 : 한해대책장비 양수기는 양수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관정은 각 밭에 산재해 있고, 송수호스와 양수기는 양수기 보관창고에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양수기 같은것은 장기간 보관하면 고장이 많이 날텐데, 실질적인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가동은 100%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수시로 점검 하십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양수기관리 요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 李洙現 委員 : 그다음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사업추진내역에 군도 10호선 확장공사와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장공사는 이사람들이 다 완공하여 군도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李洙現 委員 : 이것은 꼭 기부채납하면 받아야 합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안받게 되면 이사람들이 사업비를 다 투자 했기 때문에 사설도로가 되어, 주민들이 통과가 못되죠. 이도로가 주민들이 통과해야 할 도로인데 이사람들이 급하니까 돈을 투자하고,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부 채납을 안받으면 우리 보수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때에 조건부로 받고, 도로 파손이 되어 보수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는데, 중차량들이 다닌다든가, 그 도로로 통과 하는 차량들이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비율로 봐서, 보광같은 경우 군도 10호선은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지방도가 되었을 경우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농어촌 도로 205호선이나, 농어촌도로 208호선 같은 것은 중차량들이 다니는 사업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에, 대화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단계 투자 잔액이 6억 3,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개발계획에

수립된 3~5개사업을 메뉴식으로 선정후 지역주민공청회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우선순위 결정 시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수립된 3~5개 사업의 내용이 됩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대화정주권개발사업 계획서는 책자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3개면이 5년씩 돌아 가면서 다시 대화로 돌아 오게 됩니다.

사업이 다 완료 되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 사업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5년동안 39억을 투자했다가. 다시 15년 후에는 대화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5개는 메뉴식으로 선정해 놓고, 개발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여 어느것이 우선순위냐 하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될 성질의 것이 아니죠?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문화마을은 따로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화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위탁 시행자가 농진공인데,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이현장에 대해서,

○ 建設課長 洪基杓 : 농업진흥공사와 저희들이 위탁 시공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건설과에서요.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李洙現 委員 : 한창 토목공사가 진행중인데, 직원들 나오는 것을 제가 별로 못본것 같은데,

○ 建設課長 洪基杓 : 사실상 직원이 하나 뿐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예, 좋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기초에서 부터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업에 굉장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사업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무과에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문화마을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명년도에 대화면 건축에 대한 상당한 사업량이 있어요.

대화면에 토목직 직원이 결원되어 상당히 민원문제가 야기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토목직이 평창, 진부, 도암, 봉평 4개면에는 토목직 직원이 있죠?

○ 建設課長 洪基杓 : 아닙니다. 대화면에도 1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6년도받기반정비사업, '95년도 가을착수사업은 현재 재산리에 48ha 진행이 되고 있고, '96년도 가을착수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계획입니까? 여기에 써 놓으신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이미 도에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미 도에 올라 갔으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선정이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받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왜 형평의 원칙을 고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함에 따라 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별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공문을 냈습니다.

그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전부 선정하여 보고 하도록 했는데, 사실 보고가 잘 안들어 옵니다.

제가 조금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물량분을 더 따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상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중대라든가, 기계화영농에 이바지 한다면 군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추가 사업비를 따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결국에는 보고가 안들어 왔던 사항이면, 읍면직원들이 직무유기 한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은 건설과장

측에서는 직무유기라고 답변하기는 힘들고,

○ 李洙現 委員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발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8개읍면에 사업량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8개읍면인데, 어떤 읍면에는 2개씩 사업장이 선정되고, 어떤 읍면은 한곳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물량이 명년도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도에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를 다시 받아 올려 보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제가 보기에는 12월 31일까지 건설과에서 읍면사무소에 재조사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한 것은 '97년도 사업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 李洙現 委員 : '97년분,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1년 먼저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1년 먼저 보고가 올라 갑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금당계곡 군립공원화 계획을 보면 마지막 타시도 군립공원지정지 견학 계획, 계획은 좋습니다.

안 할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사업을 이렇게 유보된 상태에서 놔두실 생각입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아닙니다.

저희들이 36회 군정질문 사항에도 처리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당계곡 군립공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 12월 중에 타시도에 직원을 파견시켜서 그곳의 성과라든가, 실패한 사항을 충분 자료수집 하여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금당계곡을 군립공원으로 묶어 났을때 지역 주민들의 개발이

억제되고, 그러지 않고 풀어 놓으면 상수원이라든가 하천수가 오염이 되어, 이것은 심도있게 점검하여 확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질의를 하셨고, 답변한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될때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상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 입니다.

한탄 ~마하간 군도 7km 구간에는 수청리 태양석회라는 광산이 있는 관계로, 대형 차량이 많이 통과하여 노면이 많이 파여 있는 노선입니다.

거기에 벽지노선버스가 운행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노면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결행을 자주 해요.

여기에 대해 군에서는 태양석회와 협의 하여 노면정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 2차선 군도 포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보수계획은 '95년도 당초 장비는 광산에서 대고, 그회사

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에 대한 것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를 일체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 발주되어 수물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7km를 포장할 계획은 없지만, 보수계획은 연도마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회사와 군과 연계해서 보수 하도록 주민들이나 버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영월댐도 하겠다고 신문 보도에만 났지, 지금 보도된지 7년이 지나도록 댐시공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많은 고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기억하시고, '95년도 태양석회석에서 장비를 대고 보수를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할 당시 개울의 돌을 파서 매우먼 오래 가는데, 이사람들이 석회석에서 나오는 폐석을 깔아 하나하나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석회 제품을 싣는 30t 차들이 하나씩 다녀야 하는데,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기하리 송어장 앞에 가보면 시내버스가 빠져 나오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길을 이렇게 해서는 벽지노선에 적자를 보면서 운행안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버스가 안다닙니다. 길이 파여 노면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잘못하면 빙판길에 버스가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챙기시고, 태양석회 관계로 길이 많이 파여 졌지만 버스회사인 대영운수는 영세버스회사 이기 때문에 차 보수를 잘하고 새버스가 나와야 하는데, 평창운수나 강원여객은 대기업의 회사이고, 대영운수는 영세회사이기 때문에 차도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면이 안좋은 상태에서 타고 다니면 위험 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명심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탄면에 광산이 폐광되기 전에는 인구가 많아서 도읍정비 지정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구가 많이 감소 되어 3,000명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락지구지역으로 용역중에 있다 하는데, 언제 확정이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봄인가 올봄에 미탄면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듣기로는 면사무소 있는곳이 취락구조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말이 맞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미탄면 취락구조 개발 계획은 11월 14일 지구 변경에 의하여 용역회사에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들어 오면 막바로 도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고시

가 될텐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95년도 12월 중에 하겠다라고 약속은 사실상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고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는 취락지구로 포함이 되었는지는 판단이 안서서 다음에 위원님께서 다시 쟁겨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공청회 당시에 1안 2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욕구는 1안으로 정했는데, 주민의견에 따라 용역회사에 주었는지,

○ 建設課長 洪基杓 : 1안입니다.

○ 劉燉文 委員 : 미탄면사무소가 전에는 시내에 있었는데, 면사무소 장소를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내권하고 떨어진 곳에 있는데, 면사무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확인하여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9필지를 매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96년도 폐천부지 현황은 용평 5필지, 진부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진부 간평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진부 간평리 6필지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작년에 9필지를 했는데, 여기는 6필지로 되어 있는데,

○ 建設課長 洪基杓 : 용평 5필지, 그래서 11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지난번에 1군1명품의 사업장을 방문 했을때에도 본인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내에 폐천부지 때문에 사업에 지해 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 하기에는 이런 부

분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여 매각을 하시는 것이 사업자를 도울수 있는 길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더 많이 매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마지2리 터널공사하는 내용을 우리 번영회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이사항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10월 6일 군수님과 이장들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전에 번영회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항인데, 군수는 이장간담회에서 내용만 열거 해서 듣기만 하고, 군에서 대책회의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안하는 겁니까? 이장간담회때 군수님한테 건의한 것이 건설과 소관에 7건씩 됩니다.

군에서는 군수께서 각 리별로 간담회에

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우선순위가 어느것인지 판단해서 할 수 있겠끔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답변해 준 사항을 해당과에 통보가 됩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보기에에는 영월 솔치계 문제 같은 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니, 제가 보기에에는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과장님께 해석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 농림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준농림지역도 면적에 따라서 30,000㎡ 미만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준농림지역에서 내가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30,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겠다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은 농지보

준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지 전용을하고, 거기에 따라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을 하면 되는데,

○ 李慶鎭 委員 :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크면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용도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느냐, 호텔을 질수 있느냐 하는것은 건축법에서 다뤄야지,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다루는대는 모릅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10월달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렸드니,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산업과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조례로 정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시점하고 조례를 만드는 시점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기 용도대로 쓰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능 한데 조례가 안됐다는 이유 때문에 3~4개월씩 허가 행위를 못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행정적으로 마비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건설과에서는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서 합당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 것이 ,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30,000㎡ 이상을 개발 할때에

는 저희들이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서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30,000㎡ 미만을 개발 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산림법은 산림법, 건축법은 건축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처리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합당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숙박시설을 500명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청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가능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우리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이유때문에 허가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과에서는,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 하고는 거리

가 좀 멍니다.

○ 李慶鎭 委員 : 다루는 입장에서 오른 행정이라고 판단 하십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은 행정을 다루고 있는 군수가 그 지역에는 숙박업을 개발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어떤 판단이 선다면 해 줄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를 제정 할려면 조례제정을 빨리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백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 建設課長 洪基杓 : 그런것은 다수 있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부분을 과장님이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군수님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洪基杓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중부 남산연립 부근에 과속방지턱 만드는 문제 때문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그것은 사람이 없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소로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원인이 없는 민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할때, 어떻게 회신을 했나하면, 과속방지턱 설치및 관리규정상에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도로에는 할 수 있는데, 보차도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 단, 저희들이 '96년도에 농어촌도로를 개발할 때에 위험표시판은 양쪽으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전체가 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도로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지, 평창군에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가 과속방지턱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해결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과속방지턱 설치및 관리 규정상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내 표지판도 역시 아직까지 설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셨지요?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李慶鎭 委員 :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남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도로를 범람해서 하수도가 메워 지는 문제도 같이 결들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난관대 설치하는 문제, 노성제 하기 전에 임시로 처리 하셨는데 그것은 항구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말씀 내용에는 주민 모두가 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부 요구하는 기준은 반상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그렇죠, 반상회라든가, 그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가지 있는 사람보다는 종부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표자들이라던가 이사람들을 만나서 전부다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2~3일후에 동네에서 반상회를 해서 전체의견을 모아서 군에다가 신청 요구를 하면 올해라도 할수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올해는 안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전혀 없고, 사업을 할려면 재료도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되겠고, 그노선이 96년도에 놓여촌도로로 책정이 되어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96년도에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얼마전에도 두사람이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청입구에서 중부교량 세차장까지 인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그것이 몇년전에 제가 알기에는 김기열 군수도 그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다가 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전혀 안하고 계신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 建設課長 洪基杓 : 당초에 이사업을 군비로 투자해서 한번 확장해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해볼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읍급을 지나는 국도는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입니다.

시급을 지나는 국도는 시장이 되겠지만 읍·면급을 지나는 국도는 관리청이 군교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로보수를 관리하고 있는 정선국도유지에다가 확장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李慶鎮 委員 : 네, 그것이 몇년동안 주민들에 관심사항이고, 교통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도로가 협소하고 문제가 많은 도로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중에서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에는 전부 객토사업을 하는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평창군청 진입로 우측 하평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경지지역이고, 번영회에서도 준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몇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과연 경지 정리를 하기에 합당한 장소라고 보여 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建設課長 洪基杓 : 하평 거기에는 경지정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경지지구를 묶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지역 풍리자들

의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호응도가 60%이상 안되면 사업을 추진 안합니다.

○ 李慶鎮 委員 :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군청앞을 주거지역으로 정하여도 가능한 지역인데, 경지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5시 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 52分 監査中止)

(17時 1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7시를 지나므로 금일 예정된 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회의 일정이 남아 있어 회의를 연장 진행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이의 없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도시과장 이의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이의 없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군관내에 모든 도로에 대하여 사고가 많 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소수를 파악하고 계신 현황이 있습니 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이 교통이 용 지점에 대해서 국도는 교통안전공사 에서 강원도 전역을 조사한 책자가 있습 니다.

지금 각 국도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 도유지는 정선국도유지, 강릉국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개소에 대한 해소책으로 저

희들이 몇개소 사업을 지금 시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 개소수 사업은 국도에 대해서 각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위험 개소수에 대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개설이 안되 어 있는 곳은 전부다 이용합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위험한 사 항이 없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는 양 여금 사업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국도에 대해서는 위험 개소수별로 저희 들이 매년마다 정선국도나 강릉국도에 해소책으로 해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에 따라서는 국도유지에서 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봉평면과 용평면의 경 계가 있습니다.

평촌 금산교량가설한 곳에는 항상 사고 가 빈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점이 거 기에 표지판, 가드레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국도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말고 국토관리청에 협조하여 그것이 꼭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현재 무이리~ 상진부간에 국도 확·포장공사의 공정과 봉평 지역은 언제 착수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지금 현재 무이~ 상진부간 군도는 전체가 31.1km 입니다. 전체 기투자가 10km이고 , '95년까지 투자한 4.6km에서 14.6km까지 하는 것이고, 나머지 21.5km에 대해서는 군도확·포장사업에 따른 양여금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연도별로 내역은 안가지고 왔는데, 무이 ~ 상진부간의 중기계획에 따르면 '96년도에 2.1km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로 넘어가 '98년도에 3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97년도에는 왜서 빠

졌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97년도 물량이 다른 곳으로 넘어 갔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큰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문제점은 구간별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이 번잡한 곳 부터 확·포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36.1km 는 굉장히 긴 연장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따라 나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된 양여금도 한계가 있고 해서 교통이 제일 번잡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곳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군도는 100%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봉평 이효석 생가가 현재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교통난으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사업을 변경하여 앞당겨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이 군도 중장기계획상에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석 생가까지는 '96년도에 할 수 없고, '98년도에 3km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효석 생가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1km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아다리 약수에서 신약수로 연결되는 것이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사리로 올라 가는 도로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98년도에 3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포장사업중기계획에서 창동~덕거리까지의 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었죠?

○ 建設課長 洪基杓 :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앞으로 그곳의 포장

계획은 있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지방도는 저희들이 수립을 안하고, 도에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까지는 정비계획이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리 금산교가설 공사 공정이 어떻게 되어 나갑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지금 현재 공정이 80%이고, 그사업은 년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상판을 한창 하는 중인데, 요즘 일기로는 양성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그래서 감독들한테 주지를 시켰는데, 다음날 온도의 변화를 확실히 알고 콘크리트를 쳐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콘크리트를 쳐 놓고 온도가 급강하 하면 안되니까 다음날까지 기상예보를 보고 콘크리트를 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네,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진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진척현황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토지보상이라던가 그런 문제

○ 建設課長 洪基杓 : 진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 禹康鎬 委員 : 도시과 소관입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 禹康鎬 委員 : 도시과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평 시가지 우회도로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봉평 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리고, 도지사님 방문때 건의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될것 같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날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건교부로 '96년도에 1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

니다.

미탄 우회도로와 봉평 우회도로를 국토관리청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건교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1차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휘닉스파크 때문에 시가지가 혼잡한데, 조속히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
제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
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선서, 본인은 평창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
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를 맹
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평창군 도시과장 권순철
(도시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 사
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
입니다.

평창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
과소관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영목 도시계장입니다.

(도시계장 인사)

박종길 주택계장입니다.

(주택계장 인사)

박현창 수도계장입니다.

(수도계장 인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자리에 앉으시기 바
랍니다.

위원여러분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 입니다.

먼저 평창강 상수도 취수보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창강 탁류시를 대비한 접합정 시설을 하였으나 갈수기에 강물이 부족한 것은 감안하지 않고 5m 이하 깊이로 묻지 않는 관계로 '94년, '95년 홍수시 두차례에 걸쳐 흙물이 나와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므로 인하여 상수도 공사가 불시공 되었다는 평창주민들의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수도 사업비는 총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상수도 취수보 설치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공하고 있는데 평창강 167m를 막아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취수보를 막아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공법이 어떤 공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취수보를 설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수보 설치를 하는 이유는 전국에 타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림면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간이상수도 급수 가구는 64호입니다.

최근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촌 4리, 6리의 추진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했는데, 어떤집에는 1만4,500원을 내고, 또 거기에다 기본요금 2,000원은 모터나 기타 장비가 망가지면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 2,000원씩 기본 요금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집은 1만6,500원을 내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한 방림면만 유독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다른면은 다되어 있는데, 다른곳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계촌에 설치한 간이상수도만 전기요금을 꼭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위원

이 듣기로는 계촌 상수도는 전기료를 자체에서 해결해라, 앞으로 시설이 망가졌을 때에는 자체에서 수리해라, 이것은 면사무소에서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먹던 말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대민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떤 조례나 상위법을 제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청앞에 평창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시설은 비가 많이 오면 평창에 고인 물을 하천에 빼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료도 원칙은 평창군민들이 납부하여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먼저 평창상수도

를 공사하여 지역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맑은물을 공급하지 못한점을 사과 드립니다.

그것은 평창강오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서류를 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하의 5.1m~ 3.1m까지 묻혀야 할 유공관을 30cm~60cm 정도 덜 묻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달에 착공하여 내년 1월달에 마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수보를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업자로서 다른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저수보만 끝나면 곧 착공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당시 평창상수도는 15억7,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특히 유공관만은 1억7,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유성건설에서 하는 축이 1억7~8,000만원, 공사비가 인상 되었다고 하면 2억정도는 자기

들이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를 조성하는 이유는 하상을 높여 자연 여과층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를 설치 하는 겁니다.

우리군의 8개 상수도중에 7개소에 이미 취수보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다른 시군도 수원지에 취수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평창 취수보를 마치고, 간이상수도.,

○ 李相薰 委員 :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창 상수도시설공사비로 약 20억이 약간 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평창시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면 시설을 하나하나 하다, 오히려 과거 그런 시설을 안했을때에는 물맛도 좋고, 물도 잘 나왔는데,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좋아진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연 평창상수도에 좋아진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과거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샘물을 먹었어요.

옛날에 샘물을 파서 먹던 개념이 지역주민들한테 박혀 있고, 그리고 4,000t으로 확보하는 것은 공유수 개념으로 강으로 내려 오는 물을 그냥 먹기 때문에 물맛이 차이가 날겁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 李相薰 委員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 부족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20억이상의 예산만 투자하여 설치 그 기간동안에 여러가지 하자가 있어 흠탕물이 나온다든지, 이런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사업이란 것은 자금을 투자하여 무엇인가 좋아진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론을 들어 보면 좋아진것이 하나도 없어요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래서 감사를 하여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시공이 멀어 졌기 때문에 다시 유공관을 재위치에 묻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李相薰 委員 : 샘물이 과거에 나왔으면 그 위치에 집수정인지, 접합정을 매설 하든지, 기술적으로 시공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예년에는 규모가 1,000t 규모일때에는 지하 150m 밑에 있는 물을 올려 먹었는데, 지금은 그 물이 모자라고, 지하수 개발을 못하니까 공유수 개념으로 10억 투자하여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물하고 이 물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리고 접합정이라는 것은 깊이 파지 않아서 취수보를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지금 취수보는 감사를 받기 전에 이미 사업을 착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공사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흙물이 나오기 때문에 취수보를 설치하여 하상을 높여 자연 여과층을 할려고 했는데 실지 이것을 해보니까, 부실시공이라고 하여 다

시 재시공 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하는 겁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러니까 원인이 접합정이라는 것을 알게 묻어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때 보를 설치할 당시 공사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감사 결과 부실공사로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보를 설치 하는것은 유석이 있기 때문에 물이 소처럼 고이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보를 설치안하면 여과층이 씻겨 내려 가서 5m, 4.8m, 4.5m 로 얽어 질수가 있어요.

자연 여과층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 보를 설치 하는 겁니다.

○ 李相薰 委員 : 계속 답변 하세요.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다음 방렴면 간 이상수도 전기요금은 전기를 가장 많이 쓴 8월, 9월, 10월달은 군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11월 부터는 마을에서 부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름에 물을 많이 써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겨울에는 전기요금에 적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전기세와 관리비등은 어느곳이나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말씀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수리비는 평창군 조례를 보면 군비 50%, 마을의 수혜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림 간이상수도가 망가지면 군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수혜를 받는 분도 50%를 부담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간이상수도의 물을 먹는 사람은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수도를 먹는 사람은 전기료를 안내고,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 都市課長 權純喆 : 형평에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8월, 9월, 10월달에는 물을 많이 쓰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온겁니다.

앞으로 11월 달에는 전기료가 적게 나올 겁니다.

전기료라는 것은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개설해 주었으니까, 관리비를 자체에서 관리 하도록 된 것입니다.

○ 李相薰 委員 : 계촌 간이상수도 전기요금때문에 그러는데,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꼭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 都市課長 權純喆 :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를 개설 했으니까 먹는 사람이 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 李相薰 委員 : 아니, 유권해석을 과장님 단독으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전기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물을 먹어서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자체에서 해결 해야 한다는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무슨 근거

에 의해서 주민이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간이상수도는 수
혜자가 자체적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
어요.

○ 李相薰 委員 : 요금 문제예요?

○ 都市課長 權純喆 : 지금까지 제가 말
씀드린 것은 8,9,10월달에는 옛날 구관
에 전기료를 프라스 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 집집마
다 요금 미터기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
가 많이 안 나올겁니다.

많이 나왔을때 8,9,10월달은 우리군에서
전기료를 전부 부담하고, 물 수혜를 받
는 분들이 전기료를 안 물었어요.

우리 군에서 다 부담 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지금 방림면 산하 공
무원들이나 도시과나 계촌 간이상수도에
나와서 행정지도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결
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추진위원회에서 미터기 검
침을 해야 하는데, 검침하는 방법도 모

르고 있고, 예를 들어 A라는 집은 물을
많이 쓸것이다, B라는 집은 식구가 적기
때문에 조금 쓸것이다, 그래서 글자 그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1만6,500원씩 내는 집도 있
어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 지도를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평창군내에 간이상수
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곳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간이상수도를 관
리하는 곳은 다 합니다.

○ 李相薰 委員 : 간이상수도를 관리 하
는데는 다 합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李相薰 委員 : 아니, 그것이 있어요?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렇죠, 작년에
해준 미탄 회동, 임하리, 방림 구포동도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전기료를 납부합
니다.

○ 李相薰 委員 : 전기료 부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여기 법규가 있는

데요.

평창군 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 조례에 보면 제1장, 제2장, 제3장을 보면 관리비의 징수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제13조에 보면 관리비 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한다.)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타 읍면의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수혜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규정 사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都市課長 權純喆 :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업무가 바쁜관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지도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화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대화 하수도는 금년에 평창은 이미 되어 있고, 대화, 도암, 진부까지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 금년에 3,600만원을 세워 용역을 주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중인데, 승인이 나면 군 예산, 또 형평에 의해서 국비내지는 군비를 프라스 시켜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꼭 승인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업무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당초에 늦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바꾸는 과정에서 늦었고, 문화마을조성관계에서 늦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주 초에 비디오 촬영
을 하러 오면 12월 중순쯤이면 도에 상
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예, 제가 자료를 보니
까, '95년도 6월 30일 도시계획변경결정
승인신청을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했는데
'95년 11월 8일 현지확인 조사 나왔어요
어떻게 되어 6개월씩 확인조사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올때만 그냥 기다린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국토이용계획상,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바
뀌었는데, 전흥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다시 도지사에게서 받
아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어떻게 되었던 신청
서류를 낸 이후에 6개월씩 지연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히 늦은 거죠?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李洙現 委員 :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화문화마을조성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지구 변경을 선행
한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편입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답변을 들
었어요.

과장님 이 답변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
시고,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 마지막으로 '96
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량이 얼마나 되
는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96년도는 우리가
금년도에 주택개량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것
이 우리 평창 관내에 1,671동 입니다.
'96년도에 신청 한 것은 275동인데, 과
연 도에서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

다.

그래서 '96, '97에서 2,000년까지 1,671
등을 마치는 걸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
니다.

○ 李洙現 委員 :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
씀이죠?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정진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창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의해 재시공
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사항
에 대해서 알가불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
다마는 재시공을 하시는 추진계획은 어
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계획은 제가 별
도로 1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
는 상식은 금년도 12월 착공하여 내년 1
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
금현재 유공관이 총 120m 전체를 현 위
치에서 설계대로 5.1m~ 3.2m를 깊이 묻

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강건너 여만리 쪽
으로 암층이 되어 있다고 하여 한번 공
사를 이쪽 노성장쪽으로 유공관을 올려
T자로 한번 묻은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감사가 끝나
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 하느
냐, 의뢰 하지 않느냐는 과정에서 집행
기관하고 대책위원회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공교롭게도 대책위
원회는 위원회대로 감사원을 통해서 결
과를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알고 있고, 제가 염려
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군
청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하느냐
는 문제를 자체에서 해결하면 되지, 그
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의 갈등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재시
공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시점에서 집

행기관의 사고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책이나, 아니면 변영희의 소집된 장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물의를 일으킨것이 바람직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대신 변영희에서 지역주민들이 특별히 이 시공에 대하여 바라는 사항이 있느냐, 이런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주민들도 역시 희망하는 사항이 과연 취수보 시설에 많은 금액이 투자 되었지만, 과연 현위치에 하는것이 바람직 하느냐, 돈이 조금 더 추가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항구적인 위치가 있다면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날런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시간이 나신다면 변영희에 소집하여 공동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변영희 소집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변영희장님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같이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문제를 그렇게 짚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먼저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원만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 의회에서 해야할 필요성이 나와었는데, 침전지 시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침전지 시설은 군정질문에서 답변했지만 한 10억드는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하는데, 지금 현재 대체사업으로해서 고속용집침전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가능하면은 내년 예산이 허락한다면 고속용집침전기로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중래에는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급수량이 늘어나면은 침전상태를 검토해 봐야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10억이상 들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 李慶鎮 委員 : 제가 보기에는 초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인데, 예산이 얼마가 될런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 상수도 물문제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돈다하더라도 초대에서도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문제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얘기 하실것이 아니라 년차적으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하실수 있겠다는, 하시겠다는 나름대로의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알았습니다.

○ 李慶鎮 委員 : 평창상수도 수질검사는 언제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한번씩 합니다.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며는 43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 李慶鎮 委員 : 지금 그 작년 7월달에

검사한 내용으로는 이런 저런 검출내역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 都市課長 權純喆 : 작년 7월요 94년 7월요.

○ 李慶鎮 委員 : 네, 최근에 한 수질 검사 성적표가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우리가 여기서 물을 채취해서 도에 올리며는 검사과정에서 조금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지난해 미탄 유돈문위원이 질의하신 것 처럼 알미늄이 0.2보다 기준치를 초과한 0.42정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취해서 재검사 의뢰를 했을때에는 합격으로 통보가 되었고, 또 평창군에 환경보호과장을 해서 압니다만 그 물이 여름에 피서객이 올때에는 7,8,9월에는 급수가 2급수가 3급수 되고 3급수가 4급수 되듯이 질이 조금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
을 드렸습니다.

○ 李慶鎮 委員 : 지금 상수도가 농공
단지에 들어갑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농공단지예요.
네,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 李慶鎮 委員 : 주진쪽에는 농공단지
말고 다른데는 몇군데나 들어갑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수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하천에 전용상수도인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거기에도 간이상
수도를 하면은 기업체가 관리비를 계속
잘 내어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경제사정
이 어려워 가다보니까 관리비를 잘내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를 자꾸 끊기더라구
요. 아마 자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거기 그 공사를 할때
에는 군비로 하는것입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농공단지를 조성

할때 그 사업비에서 아마 했을겁니다.
군에서 별도로 도시과 상수도 부서에서
별로 지원해 준것은 없고요

○ 李慶鎮 委員 : 그 문제는 좀더 정확
히 알고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건축물의 구조물 현황을
가지고 제시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건축물 현황이 지
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평창군 상수도는 제방안으로 구역이 되
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수원지를

○ 李慶鎮 委員 : 상수도 수원지라고 별
도로 지정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都市課長 權純喆 : 상수도 수원지를
평창군은 제방안으로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 李慶鎮 委員 : 강원도 사무감사 자료
에 보면 평창군에 청원경찰 10명을 동원
해서 건축물이 기존 건물, 공작물이
22군데 있습니다.

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
하고 계시는지 어떠 어떠한 내용에 공작

물들인지 좀 알고 판단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 같지 않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 都市課長 權純喆 :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마지막으로 번영회에 소집이 되어 설명하는 문제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경진 위원님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보기에 는 검토를 하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군과 주민들하고 팽팽한 입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지금 저한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李慶鎭 委員 : 가급적이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미탄 상수도는 누수율이 68%로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원관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지선을 교체하여 조금도 나아 점이 없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물이 올라가지 않아 복욕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모여 민원을 야기 시켜 면사무소 물을 어떻게 올렸냐 하면, 한쪽 관을 막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물을 올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면에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제 주민들 얘기가 미탄면이 국방부로 부터 작전 지역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모릅니다.

○ 劉燾文 委員 : 미탄 지역이 2년전에 북방부로부터 공수여단 낙하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산이 있고, 회동 지구에 아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낙하지역으로 고시되어 농한기 지금 수시로 야간에 낙하 훈련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 안전을 위하여 전기를 정전 시킵니다.

그러면 미탄 전기만 나가면 취수정에서 탱크로 물이 올라 가지 않습니다.

탱크에 올라간 물이 집행부에서 말하면 500t이면 미탄 면민이 이를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탱크에 올라가 저장이 되기 전에 즉시 나옵니다.

그 시설이 7~8년이 되리라 생각 하는데 그때 당시 본인이 변영회장을 했는데, 그 시공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정에서 올라가는 관이 50mm, 저장탱크에서 내려오는 선이 100mm입니다.

올라 가는 것이 커야지, 내려가는 것이

큰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토목직 이창덕이라는 공무원이 초급 발령을 받아 그사람이 토목직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그사람한테 물었더니, 답변을 안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시공회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는 시공회사에서도 시인을 했어요.

그것을 다 파서 할려면 엄청납니다.

그것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당한 미탄 면민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9~10시에 낙하 훈련을 하게 되면 3~4시간 정도 정기가 나갑니다.

훈련동안 전기가 나가면 탱크에 물이 없는 관계로 원관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에어가 차서 물을 즉시 대도 3~4시간후라야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 8시, 9시에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릉 한전에만 통보하여 미탄지역

의 선을 죽여 달라고 하여 면에서도 주민들한테 미리 방송을 하기 전에 불이 나갑니다.

이런 관계로 앞으로 과장님께서서는 미탄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추구를 드립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내년엔 미탄면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본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을 미탄 42번 국도 포장 직전에 다시 아스콘 포장을 파헤치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가 되기 전에 물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劉燉文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진 위원님이 평창상수도 취수정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평창상수도 취수정을 재시공 하라는 감

사원 결과가 나와 재시공을 하게 되는데 감독 토목직이 전에는 군에서 감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면사무소로 이관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없는지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평창군 번영회에서 읍사무소와 공동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청을 못믿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신임을 못 얻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치스럽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 검토하여 그렇게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봉평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입찰예정일과, '96년이후의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봉평상수도는 71

페이지에 유인물 해 드렸습시다라는 금년도에 우리가 보광으로 부터 당초 약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착공의 20% 해서 5억을 받았고, 중간이 30% 해서 7억5,000만원, 완공 50%해서 12억 5,000만원 해서 25억을 부담토록 애시당초에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광하고 협의를 하여 금년 11월말까지 30%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12억 5,000만원이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10억을 차입을 하여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발주 의뢰를 11월 15일 재무과에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긴급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년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사업비를 15억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국민주택 용자금 미정수금 3억 4,000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

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국민주택이 지금 문제입니다.

평창군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아직 안된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이것이 문제인데, 별도로 관리하는 42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진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진척 현황에 대해서, 토지보상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여 제가 도시과에 다시 질의 하는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진부 우회도로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일전에 공문이 왔는데, 우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

성하라는 문서만 와 있습니다.

물론 편입토지 현황은 이미 나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평이 되는 토지는 204필지 113,378㎡ 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도 있고, 미복구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은 보상협의회를 12월 8일 1시에 진부면사무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보상협의회가 면민들 토지수용 될 사람들 말입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보상협의회를 하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15인 내지 23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5인으로 지금 현재 구성을 한다면 보상 위원회에 3할 이상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6~7명을 심의 위원회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보상 받는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주요 대형 건축물들, 대단위 아파트라든

가 상가를 허가 할때 현지 확인을 좀더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조치후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은 없으신지?

○ 都市課長 權純喆 : 건축물 허가를 할때에는 거의 현지확인을 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을 다 만나지 못해요. 우강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진부 시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밑에 일조권 문제가 24시간 해를 전혀 볼수 없는 문제인데, 민원이 야기되어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도 대형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허가를 득하려고 집행부에 올텐데, 그 사안을 꼭 참고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알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진부 광역 상수도 사업장 현장 문제인데요.

조금전에 수도계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명일종합건설에서 공사 대금을

중장비 공사는 하는곳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 중단사태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본사의 다른 사업때문에 사업투자를 상수도 쪽에 신경을 안쓰고 다른 쪽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都市課長 權純喆 : 진부 상수도를 명일종합건설에서 맡았는데, 명일건설에서 선급금 5억을 지불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노임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사업비 지출이 안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전화를 해도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현재는 노임, 자재비라든가 밀린 액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사업비라든가 각종 사업비가 제때 못나가면 부실시공이 된다는 그런 염려도 되죠?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 부실이 안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이 안 생기도록 잘 노력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봉평 도읍정비 '95년도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의 미착금액이 1억650만원이나 되는데,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언제쯤 도착 합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읍 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 하거든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만 하지 사업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빨리 도착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예,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공가 현황은 도시과 소관이 아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에 약 몇채 정

도 됩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10월말 현재 도에서 공가정리를 하라고 하여 읍면에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132동입니다.

10월말 현재 입니다.

○ 禹康鎬 委員 : 132동,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반정도 줄었네요?

전년도에 350채였는데, 실지 흉물로 남아 있을뿐더러 청소년 탈선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다른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소유자가 여러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가급적 빨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6개소를 가보았는데, 분드라든가, 부탄가스, 약물흡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비닐봉지에 담아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요즘 학생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범 합니다.

어떠한 행위든지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가보니까 남녀 혼숙은 일도 아니던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봤는데,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공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 하겠죠?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택지조성및 분양 현황인데요.

유치원 부지가 1필지 있는데, 진부 어느 교회에서 부지를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禹康鎬 委員 : 지금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우리가 분양을 할 때에 교회측에서는 교회를 질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샀는데, 교회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다라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현재 포기 하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지을 목적으로 샀는데 포기하는
상태가 된것은 아니지만, 해약을 하겠다
라고 왔거든요.

○ 禹康鎬 委員 : 해약을 하게 되면 위
약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래서 해약을 하
게 되면 계약금을 못찾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감수 하겠다라는 상태인데
그후에 진전 된것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위약금을 감수 하겠다
고 그러던가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요?

○ 都市課長 權純喆 :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총 매입비는 9,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 900만원을 냈는데, 해제를 하겠
다는 말은 안했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짓도록 만들어 주실 건가요?

○ 都市課長 權純喆 : 지금 현재 우리로
서는 4개지구를 용도별로 도의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중 이라
면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순복음 교회에서는 자꾸 그것을
주장하니까,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
니다.

○ 禹康鎬 委員 : 다른쪽으로 중재를 해
서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 都市課長 權純喆 : 여러가지로 검토
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환이라든가, 여러가지 있겠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천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위에 자료를 워낙 잘 해주셨지만 실질
적으로 지금 상수원 문제가 오대천뿐만
아니라 모든 천의 중요 사안들인데,
진부광역상수도 공사를 포함해서 월정
상수도까지 올라 가는 관중에서 오대산

관광호텔 시대의 송수관입니까?
송수관 매설을 시대에 요구를 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하수관,

○ 禹康鎬 委員 : 하수관은 거기에서 집수탱크밑에 까지 5.7km를 매설 하기로 하고, 밑에서 월정상수도 까지 가는 송수관을 약 12억정도 부담 시키는 것을 얘기 했다고 들었는데,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 禹康鎬 委員 : 회사측에서 답변이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시대아파트가 우리 평창군에 들어온 사업장이 3곳이 되거든요. 월정사 안에 있는 관광호텔이 있고, 이미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진부면사무소 앞에 시대아파트 20층이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어 착공을 못한 버스터미널 옆에 임대아파트 20층짜리가 있는데, 우선 시대아파트가 들어섰을때 도시과에서 두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관광호텔이 오·폐수 처리가 잘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수처리를 진부상수도 밑으로 끄는 것으로, 그것은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2개, 관광호텔 하고 3개가 풀가동을 했을때에 거기서 먹는 상수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니, 1,000t~1,200t 정도 되요.

그래서 우리가 얕은 생각에 우리 상수도 부담금이 12억정도 들어 가니까, 이 기회에 시대아파트에 부담을 시키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리가 1억9,000만원을 요구 했어요.

그것은 오수관까지 다 합쳐서, 꼭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 禹康鎬 委員 : 19억 같은데,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19억, 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오수처리관은 자기들이 어차피 부담하는데, 상수까지 부담시키면 너무 과중하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본사에 가서 윗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하고 다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가능하면 저희 군 재정 부담을 덜고, 그 회사측에서 많이 물면 좋은데, 다른것 까지 흐트러 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대산 연수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연수원도 괜찮아 지는 편이거든요? 그위에 짓고 있는 가족호텔, 물론 부도가 나서 그런것도 있지만, 같이 포함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 都市課長 權純喆 : 조금전에 말씀하신 오대산 연수원도 부도가 나서 조사장이 좋지 않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경영이 잘된다면, 이런 저런 것을 연구하여 지역에 뭔가는 부담하는 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최선의 방법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부대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상수도사업 추진하고, 집행 내역의 지도 감독 여비에 466만8천원은 어디 상수도

사업 하는데 지도감독 여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상수도는 8개읍면 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미탄 상수도에도 가고, 진부도 가고, 도암도 가고 하는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현 사업장에,

○ 都市課長 權純喆 : 예, 사업장.....,

○ 禹康鎬 委員 :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시대아파트 새로 짓는 문제는 민원이 확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영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11월 30일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

(18時 45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金 鍾 永

幹 事 劉 燉 文

委 員 李 慶 鎮

委 員 李 相 薰

委 員 李 洙 現

委 員 金 斗 經

委 員 禹 康 鎬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金 樂 雲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朴 商 滿

山 林 課 長 李 基 椿

建設 課 長 洪 基 杓

都 市 課 長 權 純 喆

○ 議會事務課

專 門 委 員 辛 教 善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 方 行 政 主 事 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4 面에 실음)

질의. 서면 답변서

질 의	김 두 경 위 원	답 변 자	평 장 군 수 (산 립 과 장)
회 의	제 37회 평창군 의회 (정기회) 향감특위 (95. 11. 30 .)		
<p>< 질의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작업을 임협에 위탁하여 생긴 문제점에 대하여 			

<답 변>

플베기사업은 산주의 자력실행 원칙이므로 산주가 실행하여야 하나 실행치 않으므로 불가피 임협에 대행 지시하는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본건에 대하여는 산림시책회의 및 사업실행 보고시 계속 문제점으로 도출, 도에 건의 및 보고되고 있음. 자부담금 40%를 군 예산이 허락하면 보조계상 할 수 있으나 군재정 형편이 허용 되지 않고 있음.

질의.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 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림과장)
회 의	제 37회 평창군 의회 (정기회) 평강특위 (95. 11. 30.)		
<p>< 질의요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개발 관련 융자금 지원단체 현황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야생화, 표고, 임산물가공 이용시설물 톱발공장에 대해 대표자와 지원하게 된 원인은. 2. 산림훼손 허가내역을 건수별로 자료 제출 (붙임참조) 			

<답 변>

'94. 1. 31개최된 평창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개최결과 산림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4. 2. 12 산림분과 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95 -'98년도의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을 의결하였고 '94. 2. 17 평창군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개최되어 산림분과위원회의 의결대로 심의 결정되었습.

'94. 4. 19. 과 '94. 12. 12. 2차에 걸쳐 강원도에 '95.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용자 신청 하였고. '95. 2. 18. 강원도로부터 '95농특회계 용자금예산이 배정되어 용자 신청자별 자격요건을 검토한 바, 신청당시의 회사가 부도로 자격이 상실되는등 대부분 적격자 없어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별지와 같이 확정 하였습.

(붙임: 산림개발관련 융자금 지원단체 및 지원 현황 1부)

○ 산림개발관련 융자금 지원단체 및 지원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용자내역			사업자
	사업장소	사업량	용자금액	
단기소득임산물 (표고생산)	대화면 상안미리 73-1	70	7,000	이기철
단기소득임산물 (표고생산)	대화면 개수리 128	68	6,500	강희선
단기소득임산물 (표고생산)	도암면 병내리 200	60	6,500	안홍규
단기소득임산물 (야생화목류)	도암면 병내리 406외4필	12,000	50,000	김창열
임산물가공이용 시설(강화및재생 제조공장)	진부면 하진부리299-1외 1필	1개소	300,000	최대복
계	5개소		370,000	5인

산림훼손 허가내역

소재지			면적	용도	기간	수허가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평창	주진	산 94 56-2	3.096	공설묘지 진입로부지	'95. 2. 21 ~ '95. 12. 31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수	
도암	황계	산 1-118	5.515	M/W 중계 소 신축	'95. 2. 24 ~ '95. 12. 31	강릉시 용강동 60-1	한국통신 강릉통신망 운용국장	
평창	다수	산 8	5.204	축사(牛) 관리사	'95. 2. 28 ~ '95. 8. 31	평창읍 다수리 166-4	차현규	
용평	도사	임 144	1.017	염소사육 (축사, 관리사)시설	'95. 3. 15 ~ '95. 6. 30	용평면 도사리 37	이든한	
평창	여만	산 41	187	시설묘지	'95. 3. 21 ~ '95. 5. 31	강남구 삼성동 96-11거봉빌라 1차라동 201	이선재	
미탄	백운	임 697-2	558	쓰레기 매립장부지	'95. 4. 7 ~ '96. 4. 6	미탄면 창리 617-2	미탄면장	
평창	주진	산 101	1.388	관리사 부지조성	'95. 5. 3 ~ '95. 12. 30	서울 마포구 망원동 392-1	한서교회	
용평	재산	산 1240 1247-1	3.798	주택부지 조성	'95. 5. 9 ~ '95. 12. 31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714-6	김기현	
봉평	진조	산 138	1.036	공장전입 로부지조성	'95. 5. 15 ~ '95. 7. 31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 392-1	김현곤	
방림	운교	산 4	4.794	광산개발 (규석)	'95. 6. 1 ~ '95. 12. 31	방림면 운교리 3-1	이춘길	
방림 대화	방림 상안미	산 442 산 366 산 368 산 331	72.689	광산개발	'95. 7. 8 ~ '95. 12. 31	방림면 방림리 산 442	박후석	
방림	계촌	산 671	365	농산물저 장고	'95. 7. ~ '95. 12. 31	방림면 계촌리 1968	최은성	

산림훼손 허가내역

소 제 지			면 적	용 도	기 간	수 허 가 자		비고
읍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봉평	홍정	산 39	655	농가주택	'95. 7. 14 ~ '95. 12. 31	봉평면 홍정리 303	이 두 미	
미탄	회동	임 872	601	농가주택	'95. 8. 30 ~ '95. 12. 31	미탄면 회동리 133	김 영 배	
진부	상진부	산 53-1	1. 771	주택부지	'95. 9. ~ '96. 6. 30	진부면 간평리 63	전 상 옥	
도암	차항	산 146-1	11. 767	사토매립 장	'95. 9. ~ '95. 12. 31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수	
봉평	진조	산 195	660	마을공동 저장고	'95. 9. 20 ~ '95. 12. 31	봉평면 진조리 289	이 수 용	
도암	수하	임 38-27	2. 671	진입로	'95. 9. ~ '96. 12. 31	도암면 수하리 산 38-1	민 흥 식	
미탄	수청	산 39 외 8필	74. 791	광산개발 (석회석)	'95. 10. 6 ~ '97. 5. 31	미탄면 수청리 137-1	김 상 봉	
평창	주진	산 94 외 4필	3. 977	공설묘지 진입로	'95. 10. 14 ~ '95. 12. 31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수	
도암	용산	임 172-1	1. 464	연립주택 신축	'95. 10. ~ '95. 12. 31	도암면 횡계리 338-3	이 준 연	
용평	재산	임 1439- 1	10. 694	가든신축	'95. 11. ~ '96. 6. 30	용평면 재산리 1560	김 낙 운	
봉평	무이	산 277-4	3. 561	주택신축	'95. 12. 19 ~ '96. 12. 31	대화면 대화리 1001	유 인 환	
계		23	112. 612				21	

질의. 서면 답변서

질 의	유 든 문 위 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 립 과 장)
회 의	제 37회 평창군 의회 (정기회)		행강특위 (95. 11. 30.)
<p>< 질의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과 임협이 사업계약 할 때 수수료 관계는 			

<답 변>

임협과 수의계약시는 기업 이윤을 계상 하지않고 수수료로 계상하며 수수료 요율은 산림청장이 승인하는 수수료 및 실비 징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의거 직접 인건비에 제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20%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협은 비영리단체 이므로 부가가치세 10%가 제외됨으로 일반계약보다는 총 공사비의 10%가 절감됨.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 (건설과장)
답 변	제 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행정 4차 특위('95. 11. 30)		
<p>< 질의요지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골재채취 업체별로 주민세에 미치는 영향, 군수입, 사용료등</p>			

< 답 변 >

- 우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업체별로 주민세에 미치는 영향, 군수입, 사용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 골재채취업체는 하천골재 채취업체 3개, 육상골재 4개업체로서 군수입 및 사용료 수입이 주민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골재채취로 인한 군 및 도 수입은 불입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재 채 취 현 황

○. 끝재채취 등복업체 현황

- 총 : 7 개 업 체
- 하천골재 : 3 개 업 체 (현림레미콘외2)
- 옥상골재 : 4 개 업 체 (현림레미콘외3)

○. '95 끝재채취 실적 및 수입현황

('95. 11. 21 현재)

구 분	허 가 (㎡)		량		채 취 (㎡)		량		수 입 금 액 (천원)		비 고
	계	모 래	자 각	자 각	계	모 래	자 각	계	사 용 료	군 수 입	
계	465,941	217,488	248,453	118,801	195,685	76,884	118,801	208,462	137,071	71,391	
하 천	86,781	-	76,781	77,310	77,310	-	77,310	91,452	91,452	-	
민 수	207,200	118,900	88,300	27,087	32,624	27,087	5,537	117,010	45,619	71,391	
옥 상	171,870	98,588	73,282	49,797	85,751	49,797	35,954	-	-	-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 (건설과장)
답 변	제 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행정 4차 특위 ('95. 11. 30)		
<p>< 질의요지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위험교량 개·보수내역을 개소수별로 사업집행 내역</p>			

< 답 변 >

- 우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위험교량 개·보수 내역을 개소수별로 사업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 도로별 교량총수는 118개교로 군도 62, 농어촌도로 56개교로서 '95년 10월 31일기준 개보수내역은 군도 7, 농어촌도로 8개교에 사업비 2,183백만원을 투자하여 위험교량 개보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점검내역

['95. 10. 31기준]

구 분	교량수	점 검 결 과				비 고
		계	개 축	보 수	정 상	
계	118	118	19	10	89	
군 도	62	62	8	4	50	
농어촌도로	56	56	11	6	39	

- 개·보수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개 축		보 수		비 고
	개 소	사 업 비	개 소	사 업 비	개 소	사 업 비	
계	15	2,183	12	2,078	3	105	
군 도	7	1,252	6	1,239	1	13	
농어촌도로	8	931	6	839	2	92	

질의 · 서면 답변서

질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건설과장)
회의	제 37 회 평 창 군 의 회 (정 기 회) 행 정 4 차 특 위 (' 95 . 11 . 30)		
<p style="margin: 0;">< 질 의 요 지 ></p> <p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수해피해지구 및 복구계획 (자연마을명 기재)</p>			

< 답 변 >

○ 우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95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지구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5. 8.23 ~ 8.27 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관내 공공시설물중 도로·교량 22 개소 8,678 m, 수리시설 23 개소, 하천 14 개소 1,712 m, 총 2,271,853 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수해지구에 대하여는 국비 1,216,523 천원, 지방비 1,124,523 천원 총 2,341,046 천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어 원상복구를 위한 측량·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96년도 해빙과 동시 모든 수해복구사업을 발주토록 할 것이며 세부적인 수해지구 및 복구계획은 별지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95 하천수해복구 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치	자연마을명	사 업 량	사업비	예정 준공일
계	14 개소		1,712	394,471	
진부면 수해 복구공사	송정 1리 송정 2리 마평 2리	평 촌 쌀면이 하마평	석축 L = 45m 흙관 L = 30m 석축 L = 35m	39,200	'96. 6. 30.
계촌6리 수해 복구공사	계촌 6리	셋 말	옹벽 L = 35m	21,600	"
용평면 수해 복구공사	장평 1리 백옥포2리	하장평 계천평	돌망태 150m 돌망태 130m	59,500	'96. 7. 30.
방림면 구포 제 수해복구	방림 4리	구 포	옹벽 L = 22m 법면보호공 L = 25m	18,500	"
대화면 수해 복구공사	상안미 3, 4리 하안미 3리	미 날 새추거리	돌망태 100m 돌망태 25m	50,100	'96. 6. 30.
대화6리 수해 복구공사	대화6리	광 천	돌망태 110m	17,200	"
계촌천 수해 복구공사	운교 1리	복너머	돌망태 795m 찰쌓기 146m	142,000	'96. 8. 30.
도암면 수해 복구공사	유천 1리 황계 2리	느릅정 의야지	돌망태 85m 돌망태 150m	46,371	'96. 6. 30.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 원	답 변	평창군수 (건설과장)
답 변	제 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행정 4차 특위('95. 11. 30)		
<p style="margin-left: 20px;">< 질의요지 ></p> <p style="margin-left: 40px;">부대비 집행내역(사업장별)</p>			

< 답 변 >

- 우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장별 부대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장별 부대비 집행내역은 어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신문광고료, 설계용품대 등 사업장별 집행실적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사업 부대비집행내역

사업명	부대비	집행내역			비고
		계	여비	기타	
계	71,233,000	41,993,560	30,585,400	11,408,160	
군도	23,113,000	10,438,900	9,478,400	960,500	서식인쇄
농어촌도로	14,272,000	4,627,000	4,627,000	450,000	
교량가설	500,000	450,000			읍면배정
비관리청 시행공사	18,948,000	14,666,660	5,464,000	1,535,860 3,406,000 4,260,800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광고료
경지정리	14,400,000	11,811,000	11,016,000	308,000 487,000	감정수수료 설계용품대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 (건설과장)
답 변	제 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 4차 특위('95. 11. 30)		
<p>< 질의요지 ></p> <p style="text-align: center;">폐천부지 매각내역(매수자 표기)</p>			

< 답 변 >

- 우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 매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5 폐천부지 매각내역에 대한 내역은 9필지 35,518㎡를 매각하여 매도금액은 738,727,950원이며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필지별내역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 '95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내역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계약체 결월일	매도금액	주 소(성명)
	소재지	지 변	지목	지 적			
1	용평면 속사리	1052-63	하천	7,574	'95. 5. 26	75,815,740	강릉포남동1151-1
2	"	1052-63	"	9,041	'95. 5. 26	90,500,410	삼양진흥(주) 최 만 순
3	진부면 간평리	725-45	"	3,479	'95. 5. 26	158,120,000	서울 서초구 잠원 동 15 - 5번지
4	"	725-46	"	4,587	'95. 5. 26	125,080,000	시대건설(주)
5	"	725-47	"	1,963	'95. 5. 26	79,300,000	김 홍 남
6	"	725-48	"	7,416	'95. 5. 26	202,230,000	
7	봉평면 원길리	129-8	"	994	'95. 5. 26	4,572,400	봉평면 원길 2리
8	"	129-9	"	325	'95. 5. 26	2,470,000	김 봉 재
9	"	129-11	"	139	'95. 5. 26	639,400	
	계	9 필지		35,518		738,727,950	3 명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 (건설과장)
답 변	제 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 4차 특위('95. 11. 30)		
<p>< 질의요지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폐천부지 매각내역(매수자 표기)</p>			

< 답 변 >

- 우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 매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5 폐천부지 매각내역에 대한 내역은 9필지 35,518㎡를 매각하여 매도금액은 738,727,950원이며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필지별내역은 불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 '95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내역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계약체 결월일	매도금액	주 소 (성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격			
1	용평면 속사리	1052-63	하천	7,574	'95. 5. 26	75,815,740	강릉포남동1151-1
2	"	1052-63	"	9,041	'95. 5. 26	90,500,410	삼양진흥(주) 최만순
3	진부면 간평리	725-45	"	3,479	'95. 5. 26	158,120,000	서울 서초구 잠원 동 15 - 5번지
4	"	725-46	"	4,587	'95. 5. 26	125,080,000	시대건설(주)
5	"	725-47	"	1,963	'95. 5. 26	79,300,000	김홍남
6	"	725-48	"	7,416	'95. 5. 26	202,230,000	
7	봉평면 원길리	129-8	"	994	'95. 5. 26	4,572,400	봉평면 원길 2리
8	"	129-9	"	325	'95. 5. 26	2,470,000	김봉재
9	"	129-11	"	139	'95. 5. 26	639,400	
	계	9 필지		35,518		738,727,950	3 명